2025 정책연구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이미애·변서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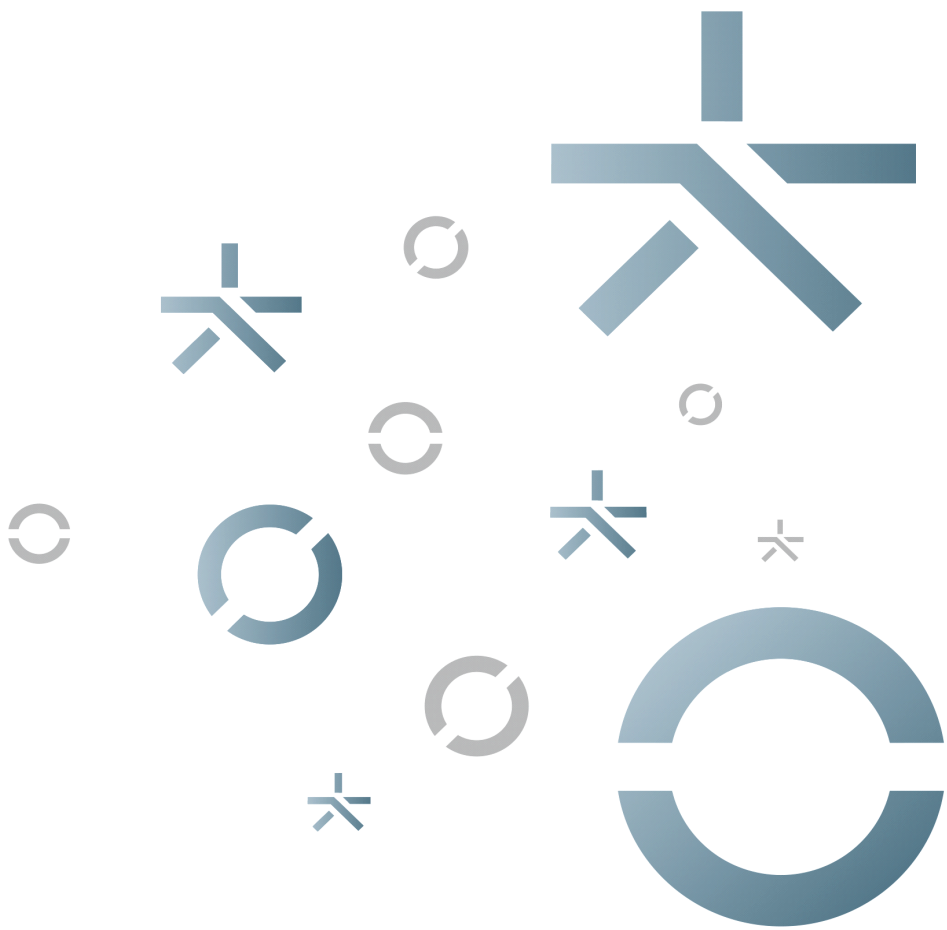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연구책임

이미애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참여

변서후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EXECUTIVE SUMMARY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 정립을 위한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변화 필요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변화 요구

2022년「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의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인천시의회 사무 조직의 개선을 위해,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인사권 독립의 한계와 자율성 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의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지방의회법」제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지방의회법」제정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 필요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결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이나 지방의회 전체 예산 중 정책사업의 비중이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보고 체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분화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가하는 인천시 행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지원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건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정책 중심의 사업 예산으로 재편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도, 첫째,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으로 독립성 확보,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 개선, 둘째,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셋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전문화·세분화를 통한 의정 지원 고도화

먼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 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걸 맞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제도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팀 단위 기능 보강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단위 체제 전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지방의회 사무조직 # 조직 및 기능 개편 # 의정지원 역량 강화

차례

TABLE OF CONTENTS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범위와 방법 ····· 4
3. 연구 수행 절차 ····· 6

2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변화

1. 지방의회 관련 환경 변화 ····· 9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 변화 ····· 13
3.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 19
4. 시사점 ····· 24

3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1. 지방의회 사무기구 ····· 29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구 ····· 37
3. 시사점 및 쟁점 ····· 45

4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 51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실태 분석 ····· 53
3. 종합 및 시사점 ····· 92

5 인천시의회 사무처 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 105
2. 직원 설문조사 결과 ····· 108
3. 수요 종합 ····· 122

차례

TABLE OF CONTENTS

6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1.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의 기본 방향 ····· 127
2.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 130
3. 정책 제언 ····· 137

참고문헌 ····· 139
부록: 설문지 ····· 145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 지방의회 관련 규정 ····· 14
〔표 2-2〕 22대 국회 의원발의 「지방의회법안」 비교 ····· 23
〔표 3-1〕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과 역할 ····· 32
〔표 3-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 33
〔표 3-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 34
〔표 3-4〕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 39
〔표 3-5〕 정책지원관 업무 예시 ····· 41
〔표 3-6〕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및 복무 형태 비교 ····· 42
〔표 3-7〕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책지원관 ····· 43
〔표 3-8〕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입법·예산정책 전담 부서기준 ····· 44
〔표 4-1〕 사례 분석 대상 개요 ····· 52
〔표 4-2〕 인천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 54
〔표 4-3〕 인천시의회 공무원 정·현원 ····· 56
〔표 4-4〕 인천시 의회사무처의 인력규모 변화(2021~2025년) ····· 56
〔표 4-5〕 2025년 인천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 57
〔표 4-6〕 인천시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 58
〔표 4-7〕 서울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 61
〔표 4-8〕 2025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현원 현황 ····· 62
〔표 4-9〕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인력규모 변화(2021~2025년) ····· 63
〔표 4-10〕 2025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 64
〔표 4-11〕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 65
〔표 4-12〕 경기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 68
〔표 4-13〕 2025년 경기도 의회사무처 정·현원 현황 ····· 69
〔표 4-14〕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인력 변화 ····· 70
〔표 4-15〕 2025년 경기도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 71
〔표 4-16〕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 73
〔표 4-1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 75
〔표 4-18〕 부산시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현원 현황 ····· 76
〔표 4-19〕 부산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 77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4-20〕 부산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 ····· 77
〔표 4-21〕 2025년 부산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 78
〔표 4-22〕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 79
〔표 4-23〕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 81
〔표 4-24〕 대구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 및 연구분석 인력 운영 현황 ····· 81
〔표 4-25〕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현원 현황 ····· 82
〔표 4-26〕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 83
〔표 4-27〕 대구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2025년 현원 기준) ····· 83
〔표 4-28〕 2025년 대구시 의회사무처 예산 구성 ····· 84
〔표 4-29〕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 85
〔표 4-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 87
〔표 4-31〕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현원 현황 ····· 88
〔표 4-32〕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 89
〔표 4-33〕 2025년 제주도의회 사무처 예산 구성 ····· 91
〔표 4-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 91
〔표 4-35〕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조직 구성 ····· 93
〔표 4-36〕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인력 ····· 95
〔표 4-37〕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예산 ····· 99
〔표 5-1〕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106
〔표 5-2〕 응답자 일반사항 ····· 107
〔표 5-3〕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강점 ····· 108
〔표 5-4〕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약점 ····· 109
〔표 5-5〕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기회 요인 ····· 110
〔표 5-6〕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위협 요인 ····· 111
〔표 5-7〕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SWOT)분석 결과 종합 ····· 112
〔표 5-8〕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8대 기능에 대한 미래 인식 ····· 113
〔표 5-9〕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기구별 기능에 대한 미래 인식 ····· 114
〔표 5-10〕 현행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인식 ····· 115
〔표 5-11〕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 115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5-12]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신설 ····· 116
[표 5-13]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통폐합 ····· 118
[표 5-14]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분리 ····· 119
[표 5-15]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확대 ····· 120
[표 5-16]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이관 ····· 121
[표 6-1]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의 의견 종합 ····· 131
[표 6-2]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안) ····· 132
[표 6-3]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안) ····· 133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 6
〔그림 3-1〕 지방의회의 구성 ····· 29
〔그림 4-1〕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 53
〔그림 4-2〕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 59
〔그림 4-3〕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 67
〔그림 4-4〕 부산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 74
〔그림 4-5〕 대구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 80
〔그림 4-6〕 제주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 86

1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발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해 자치입법을 제정하고, 자치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이를 적절하게 견제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2020년(제20대 국회,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년 1월 12일), 2022년 1월 시행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집행기관 효율성 제고 등의 분야에서의 자치분권 강화를 담고 있음
- 특히,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됨
  -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지방의회 의장 권한 확대 등

○ 이후, 2025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가 개선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도 의회 전문위원 및 담당관 직급 신설 등 지방의회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이 강화됨

○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도 2025년 7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명칭과 직급을 조정함

- 총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의 명칭을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의정정책관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변경함

○ 다만, 지방의회 조직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등이 통합 관리되고 있어 지방의회 자율적인 조직 확대가 불가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함

○ 이러한 한계로 지방의회 독립성, 조직 자율성, 의사 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22대 국회에서 총 4건(이해식案(24.6.11), 강득구案(24.7.19), 장경태案(24.9.2), 이광희案(25.3.10))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임
-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이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운영의 실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와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타 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분석과 인천시의회 사무처 내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광역시도 지방의회

○ 시간적 범위:

-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는 최신 개정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 지방의회 사무조직의 사례 및 운영 실태 분석은 최근 5년간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검토

○ 내용적 범위:

-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환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등 관련 법·제도 검토

-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타 시도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분석: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
- 인천시의회 내부 직원 수요 조사
  • 인천시의회 대내외 환경분석, 사무처 조직 운영, 사무처의 기능,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등
-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관한 법·제도 검토
- 지방의회 관련 정책 자료, 지방의회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사례 조사

- 타 광역시도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실태 조사
  • 인천시의회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수도권 지방의회와 규모가 유사한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기구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시의회의 조직 및 기능 운영 구조와 비교 분석함

○ 설문조사

- 인천시의회 사무처 내부 직급별, 조직별 관계자 설문조사
  • 인천시의회 환경 분석,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 운영,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한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수요 조사,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사무 조직과 관계
- 현재 지방의회 관련 법, 규정의 한계
-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안) 검토 등

3. 연구 수행 절차

○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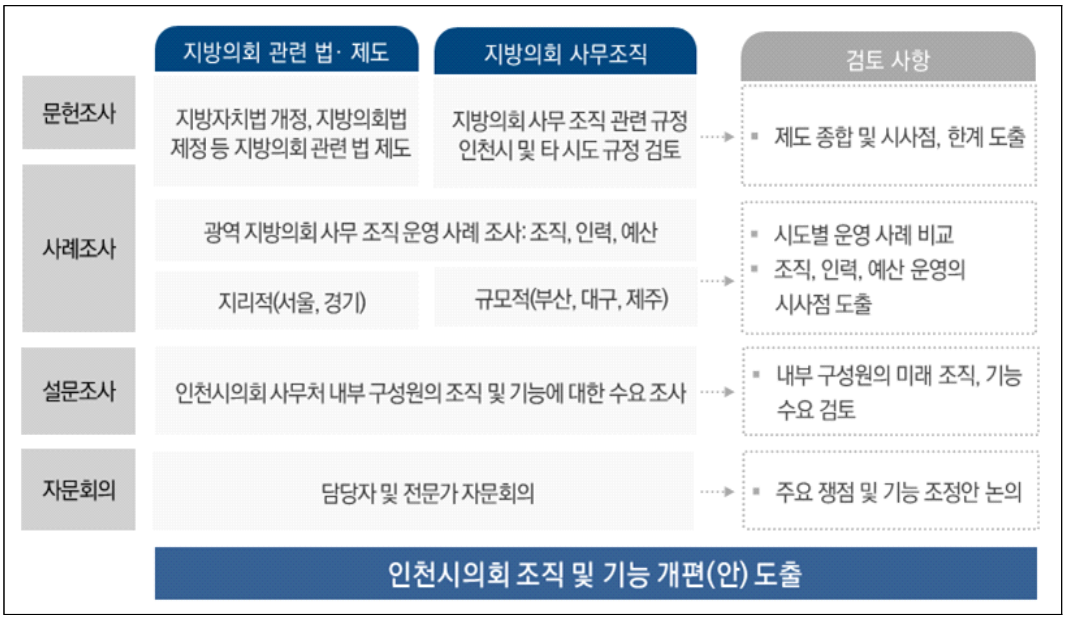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2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변화

제2장

지방의회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변화

1. 지방의회 관련 환경 변화

지방의회의 지위와 지방분권의 방향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기관으로 단순 자문·심의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임

- 「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설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통치기구임

○ 「헌법」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헌법과 법률이 필수기관으로 명시한 지방의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됨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최종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 또는 개폐하는 입법기관, 지방의회 결정사항이 실현되고 있는지 감독 및 확인하는 행정감시기관의 지위를 지님

-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동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을 갖는 자치입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47조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함께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함
- 동법 제49조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법 집행에 대해 결정권과 감시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위에 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48년 헌법 제정을 통해 설치의 근거가 보장되었고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공포를 통해 직접적인 설치를 앞두게 됐으나 전쟁으로 인해 지체되다가 1952년 선거를 통해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됨

- 이후 10년도 되지 않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인해 해산되었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라 다시 설치되는 과정을 경험함

○ 도입 초기 지방의회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서울특별시와 도,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시·읍·면에 구성되었으나,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광역의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더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설치됐고, 기초의회의 경우 시·군·구에 정착됨

-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전국적인 사무를 지방에서 수행하는 주체로 기능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더 차별화되고 유용한 공공행정을 요구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발맞춰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는 지방분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더불어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바른 지방자치제 구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과 주민의 요구에 대응해 자치입법을 제정하고, 자치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 사무를 수행하는 한편, 지방의회가 이를 적절하게 견제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취지이자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와 업무 증가

○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자치입법권은 지역이 처한 상황과 해결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드는 권한을 의미함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입법 내용도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에 전국에 총 30,358건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2015년에는 67,549건으로 2.23배 증가, 2026년 1월, 126,978건[1]으로 1995년 대비 약 4배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자치입법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제정되는 조례의 내용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제도를 입안, 추진하는 초기 수준을 뛰어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나 환경,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확대됨

-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복잡화·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역량도 더욱 고도화할 필요성을 시사함
- 지방의원은 개인의 역량이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대표성에 초점을 맞춘 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지방의회 역량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인의 노력을 넘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대폭 보강될 필요성을 지님

○ 다만, 「지방자치법」 및 대통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지방의회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실제로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총정원의 2% 미만, 예산 측면에서 0.2% 수준의 자원만 배정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2026년 공무원 총 정원수는 7,598명이며, 이중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131명으로 약 1.7%, 2026년 인천광역시 총예산 규모는 15조 3,259억원이며, 이중 의회사무처는 260억원으로 약 0.17%를 차지함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전국 시도, 시군구 조례 수(2026년 1월 28일 검색 기준)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다루어야 할 조례안, 예산·결산안, 청원 등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복잡해져 의결권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 그럼에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직원의 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광역의원 1인당 평균 2.78명에 그치고 있음[2)]

- 이들 대부분이 회의 준비와 운영, 회계, 홍보 등의 업무에 배정돼 순수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은 많지 않음
- 결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 강화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한계점을 진단할 수 있음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지방행정에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확대된 데다 SNS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 확충과 같은 기존의 문제는 물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방지 등 지역 단위 문제들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지방자치 시스템 자체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진단됨

2) 주희진 외(2023) 연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협조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회 인력 현황은 2022년 12월 기준, 총 2,427명(일반직 1,792명, 별정직 60명, 일반임기제 575명)이며,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시도의원 수는 872명으로 의원 1인당 평균 2.78명임

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 변화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제정,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2021년 1월 13일(2022년 1월 13일 시행)에 전부개정 됨

-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그동안 지방행정에 있어 객체로 머물던 주민의 위상을 지역의 진정한 주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됨(행정안전부, 2020).

○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의 연륜이 축적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주민 참여 욕구 증가로 영향력이 커진 데다 기존 제도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④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 등을 담고 있음

○ 이 중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과 지방의회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하혜영, 2021; 주희진 외, 2023)

- 먼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관련해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 의회 운영방식 자율화 등이 포함됨
- 그다음, 지방의회 책임 강화와 관련해 의원겸직 금지, 지방의회 윤리심사, 의정활동 투명성, 정보공개 등이 포함됨

○ 이는 지방의회가 달라진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복잡한 지방행정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1〕「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중 지방의회 관련 규정

구분		전부개정 前	전부개정 後
지방의회 권한 강화	사무직원의 인사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에 부여(단, 임용권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 위임)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제103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규정 없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제41조)
	의회 운영방식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에 상세 규정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제53조, 제76조)
지방의회 책임 강화	의원 겸직금지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겸직 신고 내용 외부 미공개 등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화, 겸직 신고 내역 의무화 등(제43조)
	지방의회 윤리심사	윤리특위 설치 임의 규정,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지방의회의 의무(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제65조),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등 규정(제66조)
	의정활동 투명성	의회 표결 방법 원칙 관련 근거 미비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제74조)
	정보공개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미규정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제26조, 제74조)

자료(출처): 주희진 외(2024); 권자경·양창훈·이대웅(2025)

2) 지방의회 권한 강화

○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 지방의회 운영 방식의 자율성이 부여됨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행정사무와 의정 활동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함

- 지방의원은 개인이라는 한계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무기구의 지원 정도에 따라 의정활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기존에는 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가 추천하지만 임용권은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었으며, 별정직, 기능직 및 계약직 등 일부 사무직원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었음

○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종전에 집행기관에 종속되었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지방의회 자체의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상황임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제도 신설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제41조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정책지원관이라고 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의원 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그를 보좌하는 기구 및 인력의 전문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님

○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각종 의결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으로 열거한 것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이밖에 의원의 사적 사무 지원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정책지원관의 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 해당되므로 전국 광역의원 872명에 대한 436명, 기초의원 2,988명에 대한 1,494명으로 총 1,930명까지 채용 가능함

○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 기능은 물론 정책 입안과 각종 의결사항 처리, 청원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 선발과 운영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지방의회와 접목시켜 강화하는 한편 신분과 직급,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함

❖ 지방의회 운영 방식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5장(지방의회)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면서 회의 운영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됨

- 기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회의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3조에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정례회의 집회일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함

○ 또한 기존에는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를 통해 발의할 수 있었던 지방의회 의안이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3) 지방의회 책임 강화

○ 지방의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윤리심사 강화, 지방의원 겸직 관련 규제, 의정활동 정보공개 사항,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등이 규정됨

❖ 지방의원 겸직 활동 규제 강화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지방의원들의 겸직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자 겸직금지의 대상이 구체화되었으며, 겸직활동이 허용되더라도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기관·단체,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며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 기존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겸직금지 대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겸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음
- 결국, 기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고 예외적으로 금지됨(주희진 외, 2023: 17).

지방의회 윤리심사 강화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가 강화됨
- 제65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 제66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 기존에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는 강행규정임

○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징계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

의정활동 투명성: 지방의회 기록표결제도 도입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의회 기록표결제도 원칙이 도입됨

- 기존에는 지방의회 표결 방법 원칙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 할 경우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칙이 규정되어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및 재무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1)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개요

○ 「국회법」이라는 단독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법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18조에서 지방의회 규정 등 단 두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5장에서만 지방의회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법 체계에 예속되어 있음

○ 지방의회 독립 법률(「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옴

- 현 정부의 국정과제 52-3(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 역량 및 책임성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제한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행정 감시·견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권한, 전문성,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이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제도 신설 등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했다고는 하나, 조직을 운영하는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에는 한계가 존재함
-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제21대 국회까지 총 5건의 지방의회법 발의가 있었으나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총 4건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임

- 20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전현희案, 2018년 2월)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법안 내용은 대부분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 반영됨
-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 4건(이해식案 20.11.17, 서영교案 21.08.18, 이원욱案 21.12.29, 박성민案 23.9.20) 모두 임기만료 폐기
- 현재 22대 국회에서 총 4건(이해식案(24.6.11), 강득구案(24.7.19), 장경태案(24.9.2), 이광희案(25.3.10))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임

2)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현재 발의된 총 4개 「지방의회법案」 중 이해식의원案, 강등구의원案, 장경태의원案은 총11장 96개 조항으로 조문 구성이 동일하며, 이광희의원案은 총 13장 116개 조항으로 3개 案에 일부 규정이 추가되어 있어, 이광희의원案을 중심으로 4개 案을 비교 검토함

- 이광희의원案은 집행부의 조례 지출계획 통지의무, 의정활동 지원기구 설립, 정책지원관 신분·정원 등 조례로 자율화 등이 추가

○ (조례의 제정)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 (지방의회법안)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

○ (의회의 예산)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함(안 제37조)

- (현행)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하여 배분
  - (현행) 지방자치단체(집행부)가 지방의회 예산 편성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독립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

○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 이외에 조례로 규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42조)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의정비 이외에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용, 구금 시 의정활동비 미지급 등 규정 추가
  -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의정활동비를 지급 → (지방의회법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외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용 지급
  - (현행)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지급 규정 없음 → (지방의회법안) 구금 시 의정활동비 미지급
  -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의회법안)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사무직원 인사) 지방의회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36조)

- (현행) 지방의회간 인사교류 미규정→ (지방의회법안)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인사교류 가능

○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기구 설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신분, 자격요건, 직무 범위 등은 조례로 정함
-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 (지방의회법안) 의원정수(강득구위원안), 의원정수의 2배(장경태의원안)

○ (전문위원과 공무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직급과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현행) 필요한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의회법안)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이해충돌 방지)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동 방지를 강화함

- 법인·단체, 재산·가상자산 등 사적 이해관계 관련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안 제46조), 이해충돌에 대한 신고 및 표결·발언 회피신청 의무 신설(안 제48조~제49조)

  • (현행)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동 방지 규정 없음 → (지방의회법안) 사적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동 방지 규정

○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 가능

- (현행)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방의회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조례로 정함

- (현행) 감사·조사 결과 시정 요구만 가능 → (지방의회법안) 시정 요구와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가능

○ (감사원 감사청구)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100조)

〔표 2-2〕 22대 국회 의원발의 「지방의회법안」 비교

구분	이해식의원, 강득구의원, 장경태의원 안	이광희의원 안
구성	총 11장, 96개조	총 13장, 116개조
조례의 제정	• 지방의회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함 (§4) ※ (현행) 지방자치단체(주체)가 법령(범위)의 범위 내	• 지방의회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함 (§10) ※ (현행) 지방자치단체(주체)가 법령(범위)의 범위 내 • 지자체에 조례 제출계획 통지의무 신설(§8)
의회의 경비	•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	
의정비 등	• 의정비 이외 조례로 규정하는 비용 지급(§31① 4호) • 구금 시 의정비 미지급(§31 ③) • 소급 지급시, 조례로 정하는 이자 가산(§31④) • 의정비심의회, 조례로 운영(§31⑤) ※ (현행) 시행령 → (개정) 조례	• 의정비 이외 조례로 규정하는 비용 지급(§42 ① 4호) • 구금 시 의정활동비 미지급(§42 ③) • 의정비심의회, 조례로 운영(§42 ⑤) ※ (현행) 시행령 → (개정) 조례
사무직원 인사	• 부의장을 부단체장으로 간주하고,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 (강득구의원안) 의회 사무기구의 기관·직원 등에 대한 감사(자치감사) 권한 명시	
의정활동 지원기구	• 관련 규정 없음	• 의정활동(예산·입법 등)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장(長)과 직원을 둠(§35)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 직급·직무 등은 시행령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32) ※ (현행)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내 (개정) 강득구안 의원정수, 장경태안 의원 2배(광역), 의원정수(기초)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정원·신분·자격요건·직무·임용절차 등은 조례로 정함(§43)
전문위원	•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음 ※ (현행) 필요한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음	
이해충돌 방지	• 사적 이해관계 등록·신고 및 관련 표결·발언의 회피 의무 부여	
고충민원 조사요구	• 관련 규정 없음	• 회부된 청원이 정부 차원 조사가 필요한 고충민원일 경우, 위원회 의결로 권익위 조사요구 가능(§101)
행정사무감사·조사	•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가능 ※ (현행)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사항은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며, 시정요구만 가능	
감사원 감사청구	•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관련 감사청구 가능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5). 지방의회 교육협의체 회의자료

4. 시사점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사점

❍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의회 운영 방식의 자율성 부여, 지방의원 겸직 관련 규제, 지방의회 윤리 심사 강화,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등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 첫째, 지방의회 사무조직의 조직 구성에 한계를 가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지방의회 조직 구성에 관한 전면적인 자치조직권은 보장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조직구성권은 지방자치단체단체 전체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됨
- 즉,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정해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내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권만 가짐

❍ 둘째, 지방의회 예산 독립에 한계를 가짐.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회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여 독립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음

- 지방의회 운영 및 인건비 등 전체 예산이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되어야 근본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임

❍ 셋째,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감사기구가 부재함

- 현행법상 지방정부의 감사기구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음.
- 또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직원의 비위 및 비리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은 징계권만 가지고 있으며, 감사권은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독립되지 못함(권자경 외, 2025: 44)

2)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변화

○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 편성권, 정책지원 인력 확대, 감사기능 확대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자치입법권의 주체와 범위 확대

○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갖는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지방의회는 법령의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요구됨에 따라 자치입법권의 주체와 범위가 확대됨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회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의회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

의회 경비 예산 편성 기능

○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요구됨에 따라 의회 경비 예산 편성 권한이 확대됨

- 현행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하여 배분되는 구조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기관과 협의, 조정, 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됨

○ 따라서, 지방의회 운영 및 인건비 등 전체 지방의회 예산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하여 자체 계상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됨

○ 다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업무와 조직, 인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직 구성이 필요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 기구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규모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확대됨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나, 지방의회법안에는 의원정수의 범위 또는 의원 정수의 2배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신분, 자격요건 등 조례로 둘 수 있도록 요구됨
-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법안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요구됨

○ 따라서,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규모에 비해 2배 이상 증원이 필요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요구됨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도 필요함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 기능

○ 지방의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의 업무 중 '의회 자체감사'를 두어 인사운영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

-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 감독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

○ 또한, 지방의회에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이 강화됨

○ 따라서,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에는 감사기구가 부재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3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지방의회 사무기구 관련 제도 운영 현황

1. 지방의회 사무기구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의 및 기능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있음

- 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음
- 사무기구는 시·도의회는 사무처, 시·군·구의회는 사무국(과)를 두고 있음

〔그림 3-1〕 지방의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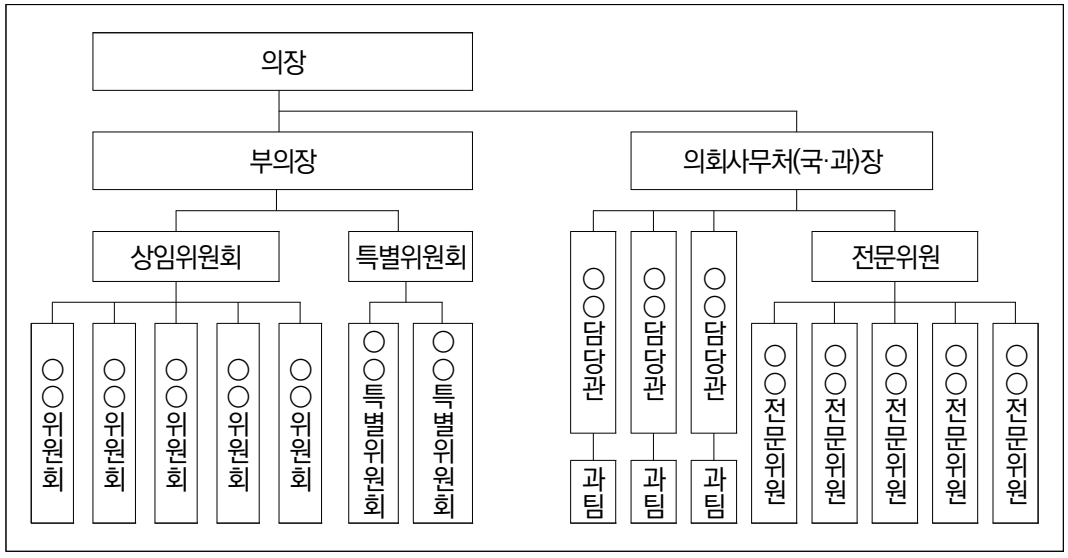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p16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지방의정 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조직으로서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관임(김건위 외, 2021: 22; 이관행, 2015: 499)

○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주된 역할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예·결산 심의와 지방의회 의결 기능을 보조함
-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관인 지방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기능을 보조하는 한편, 집행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상호 연계 기구로서의 기능을 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능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주희진 외, 2024: 18-19).

○ Worthley(1976)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조직유지 차원, 의회운영 차원, 기능 차원으로 분류함(박노수 외, 2021).

- 첫째, 조직유치 차원(housekeeping dimension)은 모든 조직체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 의미함
  - 회계·경리, 건물·시설물 관리, 문서처리, 인쇄 작업, 우편물 발송, 인사관리, 사무실 배정 등의 기능이 해당됨
- 둘째, 의회운영 차원(operational dimension)은 의회라고 하는 특정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체의 업무를 의미함
  - 위원회 구성·배치, 의사진행, 회의록 작성, 의원 지원제도 운영, 대외관계, 조직 발전 등의 기능이 해당됨
- 셋째, 기능 차원(runctional dimension)으로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견제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의미함
  - 예산 심의, 청문회 개최, 정책사업 평가,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가 해당됨

○ 김건위 외(2021)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 기능을 기관(조직)유지 관리 기능, 의원지원 기능, 연구 및 보고 기능, 의정지원 기능으로 분류함

- 기관(조직)유지관리 기능은 조직의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이 있음
- 의원지원 기능은 의사진행 계획 수립 및 조정,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지원, 의사진행 보좌, 의안의 처리 및 의결의 문서화, 청원·민원의 접수 등의 기능을 포함함
- 연구 및 보고 기능은 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함
- 의정지원 기능은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함
- 이외,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홍보 기능, 교류지원 기능, 간행 기능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박노수 외(2021)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을 크게 사무처리 기능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 8가지 기능과 역할로 구분함

- 먼저, 사무처리 기능은 지방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말하며, 조직유지, 의회운영, 기능유지, 여론수렴 기능이 있음
  - 조직유지 차원에서 의회 자체의 유지관리 기능으로 조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업무이며, 직원의 인사관리, 의회의 회계 및 경리 업무,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 문서의 접수 처리 등이 포함됨
  - 의회운영 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 배치하는 업무와 위원회의 회의장 준비·관리,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의사진행, 회의록의 작성 등이 포함됨
  - 기능유지 차원에서 의회와 의원에게 부여된 법령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나 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법,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및 확정, 각종 정책의 평가 등이 포함됨
  - 여론수렴 차원에서 의회와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통로의 기능이며, 집단 및 개인의 민원처리, 의회에 제기된 청원의 처리, 민원현장의 확인, 주민들과의 소통 및 상호작용 등이 포함됨

- 그다음, 의정활동 지원 기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조직 차원의 지원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입법지원, 정책지원, 조사·분석, 의회 역량강화 기능이 있음
  - 입법지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기본 역할 중 하나인 의원들의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자치법규 입법지원, 법령 개선 건의안, 해외 지방자치법규 통향 파악 등이 포함됨
  - 정책지원 차원에서 의원 의정활동 중 정책분석 및 결정을 위한 지원 기능이며,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의회 결의안, 동의한 지원 등이 포함됨
  - 조사·분석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 지원 기능이며, 의안의 조사 및 분석, 각종 영향평가 분석, 자치법규 및 예결산 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이 포함됨
  - 의회 역량강화 차원에서 의회 초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원 역량 강화 연수 지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외국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등이 포함됨

〔표 3-1〕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과 역할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업무 내용
사무 처리	조직유지	• 인사관리, 회계·경리, 건물 시설물 관리, 문서처리, 인쇄작업, 우편물 발송, 사무실 배정, 대외관계 등
	의회운영	• 위원회 구성·배치, 의원연구단체 운영, 의사진행, 회의록 작성, 전문위원·정책지원 전문인력제 운영, 조직 발전 등
	기능유지	• 자치법규 입법, 예·결산 심의 확정, 집행기관 행정사무 및 정책사항 평가, 교육자치 관련 업무, 각종 의결권 행사 등
	여론수렴	• 집단민원 처리, 청원처리, 민원현장 확인, SNS 민원 처리,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입법지원	•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자치법규 입법지원, 법령개선 건의안, 해외지방자치법규 동향 파악 등
	정책지원	• 집행기관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의회 결의안, 동의안 지원 등
	조사분석	• 의안의 조사 및 분석, 각종 영향평가 분석, 자치법규 및 예결산 자료 조사 및 분석, 의원 요청사항 분석 등
	역량강화	•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역량 및 기능 강화 연수, 의원 청렴도 증진 등

자료(출처): 박노수 외(2021); 주희진 외(2024)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규정 및 기준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국장과 직원들 둠

- 각 시도는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통해 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과 의회사무처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에 제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시도-시군구에 따라 구분하되, 시도는 의회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의원 수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를 국과 과로 구분하고 있음

〔표 3-2〕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	•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4]

○ 동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을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특별시, 부산광역시,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도에 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담당관을 둘 수 있음
-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를 제외한 시도의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표 3-3〕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국장	과장 또는 담당관	담당관
시·도	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구분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주: 1) (시도)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를 제외한 시·도의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2) (시도)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
3) (시·군·구) 위 표의 직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제15조 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4]

❍ 또한, 동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 및 인구 800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을 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제2조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함.
- 제3조 하부조직으로 처장 밑에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입법담당관을 두며, 의정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 또한 소속 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회를 두며,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3)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및 인사 제도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임명은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함

- 즉,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지방의회사무처의 조직 여건 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정함
- 자치단체장에 의해 정해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내에서 의장이 임명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에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3]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 조례로 결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해짐

❍ 반면, 사무직원의 임면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함

3) 기준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인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임.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수 등의 기초지표 변동을 반영한 후, 지역현안에 따른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제2항에 따라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소방본부 등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등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에 따라 매년 정해짐

- 이에 따라 정해진 의회사무처 정원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력이 운영됨

2.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구

○ 지방의회 의원의 예산·결산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사무기구의 입법·예산 등 정책 부서로 구분하고 있음

1) 전문위원

의의

○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의미함

- 즉, 위원회에 두는 의원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좌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능임
-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만,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의원정수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모든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위원 제도는 지방의회의 위원회 중심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대한 사무지원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지방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도입됨(주희진 외, 2023: 129)

- 지방의회 위원회 제도는 현대행정의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은 어렵고 부적합하므로,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를 통해 의안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행정안전부, 2025: 16)

직무

○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며,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68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의 사무는 다음과 같음
  -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
  - 2. 예산결산 검토·분석,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3.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4.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관련 조사, 수집 자료의 제공
  - 5.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 7.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함. 다만, 특별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함

직급과 정수

○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직급 및 수는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 동 규정에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표 3-4〕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지방의원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30명 이하	7명 이내	6명	1명
40명 이하	9명 이내	7명	2명
50명 이하	11명 이내	7명	4명
60명 이하	13명 이내	8명	5명
80명 이하	16명 이내	8명	8명
100명 이하	18명 이내	9명	9명
11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20명 이하	22명 이내	12명	10명
130명 이하	23명 이내	12명	11명
140명 이하	24명 이내	13명	11명
150명 이하	25명 이내	13명	12명
151명 이하	26명 이내	14명	12명

주: 1)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함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2)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의의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임

- 2022년 1월 12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회 의사운영·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구분됨

신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에 따른 임용방법 및 절차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따르며(행정안전부, 2022: 88),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함

- 다만,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음

직무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지만, 지방의회 운영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 또는 전문위원과 역할이 다름(행정안전부, 2022: 20)

-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임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4]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영,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결함
  -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행정시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인사청문
  - 제48조(서류제출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4) 타 업무(단순 행정사무 등) 병행 등 도입 취지와 다른 운영 방지를 위하여, 법령에 명칭·직무를 명시하고 있음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2조(의회규칙), 제83조(회의규칙)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의정활동 지원의 예시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의원 요구자료 작성 등 요청사항 지원,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및 보도자료 작성, 의원발의 조례안 초안 마련, 회의·토론회 개최 지원 등(행정안전부, 2025: 84-85).
-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표 3-5〕 정책지원관 업무 예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예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예시)
■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 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수집·정리 ■ 의정활동 현안 관련 간담회 개최 지원 ■ 의정활동 관련 의원 명의 기고문·사설 등 작성 ■ 의정활동 일환으로서 국내·외 의원연수 준비·동행 ■ 의정활동 관련 의원 외부 활동(공청회·토론회 등) 수행	■ 지방의회의원 개인 SNS 계정 관리 ■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직접 작성 ■ 의정활동과 무관한 외부 활동 지원 ■ 의원 개인 및 정당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등 작성 ■ 지방의회의원 개인 일정(지역구 행사, 지역구민 민원 처리 등) 보좌 ■ 지방의회의원 지역 행사(의정활동 무관) 의전·수행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5)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85p

배치·복무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사무처(국/과)에 전부 배치 가능함

- 위원회에 배치하는 경우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전문위원이 관리하며,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지방의회의원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따르되, 복무·평정 등 인사관리는 사무처(국·과)장이 담당함
- 사무처(국/과)에 배치하는 경우 별도 부서(담당관실 등)·팀을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에 배치해 관리하며, 정책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복무·평정 등 인사관리는 사무처(국·과)장이 담당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하는 형태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존재함(고경훈, 2023; 주희진 외, 2024))

- 위원회 배치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유리하며, 지방의회의원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외 추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정책지원 전문인력 간 업무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사무처에 배치할 경우 지방의원 개인 보좌관화 방지,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 업무 집중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당이 서로 다른 2명의 의원을 1명의 정책지원관이 지원할 경우 갈등, 의정활동 범위 외 일반업무 관련 의회 사무기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이중적 체계로 혼란 발생 등의 단점이 있음

〔표 3-6〕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및 복무 형태 비교

구분	위원회 배치	사무처 배치
배치	■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 배치	■ 사무기구 내 별도 부서 또는 팀 배치
복무	■ 정책지원 활동: 소관 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 관리 ■ 그 외(복무활동, 근무상황 등) 사무처장 관리	■ 정책지원 활동: 지방의회 의원 관리 ■ 그 외(복무활동, 근무상황 등) 사무처장 관리
장점	■ 상임위원회 별 전문성 강화 유리 ■ 의원과의 친밀성 증대,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한 의원과의 소통 강화	■ 의원 개인 보좌관화 방지 ■ 정책연구 집중, 자율적 및 능동적 의정활동 지원 가능 ■ 정책지원 업무 집중 및 효율성 극대화
단점	■ 전문위원 지휘, 감독으로 업무 외 추가 업무 담당 가능성 존재 ■ 정책지원 업무에 대한 집중도 하락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문제점 발생 ■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로 지방의회 각 위원회 내 전문위원 및 기존 인력과의 업무상 모순 발생 가능성 존재 ■ 업무의 연속성 및 전보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한계점 발생 ■ 지방의회 의원과의 유대감 강화로 의정활동 외 사적 업무 수행 우려 존재	■ 정당이 다른 2명의 의원을 1명의 정책지원관이 지원할 경우 갈등 발생 ■ 의정활동 범위 외 일반업무 관련 의회 사무기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지휘, 명령 체{로 혼란 발생 ■ 기존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과는 다른 차원의 지휘, 명령 체계 구축 필요 ■ 성과평가를 위한 법령 또는 조례상 명확한 근거 필요 ■ 전문위원실을 통한 업무 요청시 의원의 정확한 의미 파악의 어려움 발생

자료(출처): 고경훈(2023), 주희진 외(2024)

의무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함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등

○ 별정직 신분인 국회의원 보좌관과는 달리, 정당 업무나 지역구 관리 등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원할 수 없음

〔표 3-7〕 국회의원 보좌관과 정책지원관

구분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지원관
법적 근거	국회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제2조)	지방자치법(제41조)
인원	의원 1인당 8명	의원정수 1/2 이내
신분	별정직 국가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	일반직 지방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
채용	채용공고 생략, 개별 의원실 채용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배치	개별 의원실	위원회 또는 의회 사무기구
직무 범위	제한 없음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선거운동, 정당 가입 및 활동 등 허용)	시행령에 제한 범위 규정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필요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5)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86p

3) 사무기구의 정책부서

○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조례에 따라 자율 설치되므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입법 및 예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기도 함(행정안전부, 2022: 62)

- 입법·예산정책 전담 부서는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입법 및 예산분석 지원, 비용추계, 입법·예산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입법·예산정책 전담 부서는 집행부의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기초 분석 및 타 지역의 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표 3-8〕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입법·예산정책 전담 부서기준

구분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입법·예산정책 전담부서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68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 법적 근거 없음 (각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정의	■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정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 정책연구위원(부산) ■ 입법조사관(서울, 경기) ■ 예산분석관(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 추계분석관(서울) ■ 정책자문위원(제주)
목적	■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 입법·정책·예산 분야 지원
업무	■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보고의 처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 ■ 의회규칙, 회의규칙 등	■ 시정/도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업무보고 등 지원 ■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등에서 업무 규정
정수	■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별표5]	■ 의원정수 1/2 범위 내	■ 지방의회 자율 결정

자료(출처): 행정안전부(2025)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87p; 류춘호(2022). p.395 재인용

3. 시사점 및 쟁점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체 운영 예산에 대한 편성은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함

○ 즉, 예산 심의 및 확정, 결산 심사 권한만 지방의회에 있고,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있어 지방의회 자체 운용 예산 편성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됨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 직급 기준, 정책지원 인력의 정수 및 운영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함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명칭, 정원,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짐
- 전문위원, 정책지원 인력의 정수, 직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됨

○ 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은 가지지만, 지방의회 조직 구성권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행정 환경 및 수요에 맞는 조직의 편성, 인사 배치, 정원 증대 등에 대한 자율성은 제약이 있음

지방의회 직급의 불균형 -〉 지방의회 직급 신설 필요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다음 바로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연결되는 조직 체계를 가짐

○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기구 장의 직급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1급을 제외하면 대부분 2급으로 운영([표 3-3] 참고)되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경우 기획담당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며, 실·국·본부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1급에서 3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임(주희진 외, 2024: 36-37)

○ 반면, 의회사무처에는 국장급 직제가 부재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로 업무 범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지원 업무가 사무처장에게 집중됨으로써, 사무처장 통솔 범위의 한계가 발생 가능(김종석, 2024: 4)

- 총무, 인사, 입법정책 등 운영 업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임
- 이러한 중간 직제의 부재는 의회사무기구의 인력 적체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김정인 외, 2022: 김종석, 2024)

○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장이 집행기관에서는 실·국·본부장의 직급으로 인식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지원하는데에도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주희진 외, 2024: 37)

○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2023)는 시·도의회의 행정지원 업무가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 분산과 직급 공백 해소를 위해 사무처장의 직급 1급 상향 및 2-3급 실·국장급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음

- 의회사무처를 행정사무 지원 및 의사운영을 담당하는 의회사무국과 입법 및 예산정책을 담당하는 입법·예산정책으로 이원화를 통해 의정지원 전문성 제고 요구
- 2024년 3월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 및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였으나, 지방의회에 대한 사안은 제외됨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승진 적체 및 의회 근무 기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 직원은 사실상 4급까지 승진이 제한됨에 따라 의회직원의 승진 적체와 의회근무 기피 문제 발생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됨.

- 사무기구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이 한정되어 있고, 하위직급 분포가 과하게 높을 때, 향후 심각한 승진 및 전보 적체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
- 사무기구장의 직급 제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직급 제한, 지나친 하위직 직급의 분포 등은 복무관점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 독립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김정인, 2022: 402-403).

전문위원 직급 제약

○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과 5급 전문위원 수는 총 정수로 제한받고 있음.

-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조직 팽창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지적됨

○ 또한 전문위원 수에서 4급과 5급 이하의 전문위원 수가 불일치하고 있음

- 4급과 5급 전문위원 수가 일치하는 것은 지방의원 수가 80명 이하일 때와 100명 이하일 때로 각각 8명, 9명을 두도록 되어 있음. 이를 제외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보다 많은 역피라미드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 전문위원의 직급 구조가 역피라미드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전문화·분업, 계층제, 통솔범위 등의 조직구조 형성 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님

4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분석

제4장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 본 연구는 타 광역시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운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의 특징과 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은 인천시의회가 직면한 조직 운영 여건과의 비교 가능성과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선정함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리적 기준과 규모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지리적 기준의 경우 인천시와 동일한 수도권에 위치하며 광역행정 수요와 정책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함
- 규모적 기준은 인천시와 인구 규모 및 의원 정수가 유사한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이러한 구분은 수도권 대규모 의회의 조직 확장 및 기능 분화 양상과 인천시와 유사한 규모의 광역의회가 채택하고 있는 조직 운영 방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인천시의회의 조직 규모 대비 기능 배치의 적정성, 전문인력 운영 수준, 사무기구 구조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진단함

○ 다음 표는 사례 분석 대상 지방의회의 의원 구성과 의회사무처 조직 구성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 증가에 대응하여 국·과 단위 조직 확장과 전문위원실 다수 운영 등 기능별 조직 분화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부산광역시의회·대구광역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인천시의회와 유사한 의원 규모를 가지면서도 사무기구 조직 형태와 전문위원실 운영 방식에서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어, 규모 대비 조직 설계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유의미한 사례로 판단됨

〔표 4-1〕 사례 분석 대상 개요

구분		의원 구성	의회사무처 조직 구성
지리적	인천광역시의회	36개 지역구 총 의원수 40명 (비례대표 4명 포함)	1정책관, 1실, 3담당관 7 수적전문위원실
	서울특별시의회	101개 지역구 총 의원수 112명 (비례대표 11명 포함)	1국, 7과, 1실, 12 전문위원실,
	경기도의회	141개 지역구 총 의원수 156명 (비례대표 15명 포함)	1국 8과, 14 전문위원실
규모적	부산광역시의회	42개 지역구 총 의원수 47명 (비례대표 5명 포함)	5 담당관, 7 전문위원실
	대구광역시의회	36개 지역구 총 의원수 32명 (비례대표 3명 포함)	1정책관, 4 담당관, 7 전문위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2개 지역구 총 의원수 40명 (비례대표 8명 포함)	4담당관 8 전문위원실

주: 의원 구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기준, 의회사무처 조직 구성은 2026년 1월 14일 검색 기준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실태 분석

1)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① 조직 구성

○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의장 및 부의장 산하에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체계임

- 사무처장은 의회의 의사운영, 입법지원, 정책지원, 행정지원 기능을 총괄함

○ 2026년 기준,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1정책관, 1실, 3담당관, 7 수석전문위원, 14담당·7전문위원 체계로 구성됨

- 2025년 5월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에도 일부 조정이 이루어짐
- 총무담당관의 명칭을 의정정책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직위에 3급 직급을 신규로 승진 임명하여 기존 4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3·4급 복수직제 1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직급 구조를 조정함
- 기존 4급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 직제 명칭이 일부 정비됨
- 해당 조정은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의회사무처 전체 정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었음

〔그림 4-1〕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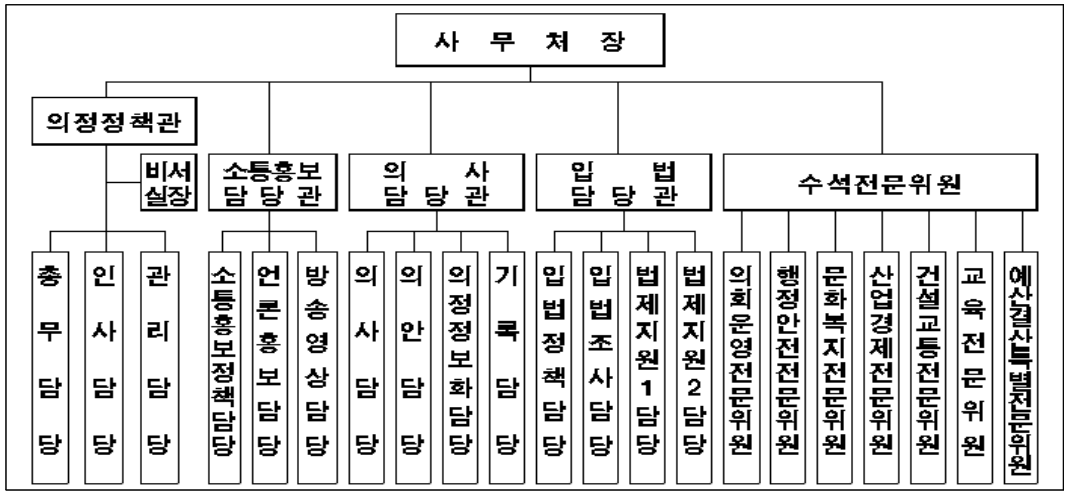

자료(출처): 인천시의회(2026). 인천시의회사무처 내부자료.

○ 담당관 조직은 기능별 과 단위 조직이라기보다는 복수의 기능을 포괄하는 구조로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의정정책관 아래 총무담당, 인사담당, 관리담당, 비서실장을 두고 있음
- 소통홍보담당관 아래 소통홍보정책담당, 언론홍보담당, 방송영상담당으로 구성
- 의사담당관 아래 의사담당, 의안담당, 의정정보화담당, 기록 담당으로 구성
- 입법담당관은 입법정책담당, 입법조사담당, 법제지원1담당, 법제지원2담으로 구성

○ 또한,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설치되어 있음

- 전문위원실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로 구성
- 각 전문위원실은 안건 검토, 조례 심사, 예산·결산 심의 지원 등 위원회 단위의 의정활동을 지원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전문위원실 아래 배치되어 있음

-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4-2〕 인천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	
의정 정책관	■ 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 의회소관 예산 편성·집행·결산 ■ 의원등록, 재산·병역 사항 신고 ■ 의전·대외협력·교류 등	■ 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 ■ 조직,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 의정자료 관리 및 의회 자료실 운영
소통홍보 담당관	■ 홍보 종합계획 수립 ■ 의회 홈페이지, 전산망 및 전화시스템 관리 ■ 회의 인터넷방송 등	■ 홍보콘텐츠·영상·간행물·홍보물품 등 제작 ■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의사 담당관	■ 의사운영기본계획 수립·조정,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 행정사무감사 운영 전반	■ 결산검사위원 위촉, ■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각종 의안, 청원·진정, 의원요구자료 접수·처리 ■ 회의록
입법 담당관	■ 의원발의 조례 입법지원 ■ 자치법규 등의 법제지원 ■ 의정 주요 현안의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 주요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쟁송업무 처리, 고문변호사 운영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전문위원	■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심사결과 보고 ■ 예산결산 검토·분석,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 소속위원 질의 관련 조사·수집 자료 제공 ■ 일반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자료(출처): 인천시의회(2025). 인천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자료.

② 인력 구성

○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정·현원은 2026년 1월 기준, 정원 140명, 현원 13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5명 부족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급별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1명, 4급 12명, 5급 21명, 6급 63명, 7급 40명, 8급 1명, 전문경력직 2명으로 구성됨
- 3급은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라 의정정책관 직위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기능별, 부서별 인력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의정정책관은 29명으로 인사, 회계, 일반 행정 등 의회사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3급 1명, 4급 2명, 5급 4명, 6급 13명, 7급 9명으로 구성됨
- 소통홍보담당관은 12명으로, 대외협력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5명, 전문경력 나군 1명으로 구성됨
- 의사담당관은 18명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의사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1명으로 구성됨
- 입법담당관은 15명으로 조례안 검토, 법제 지원 등 입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구성됨
- 전문위원실에는 교육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61명의 인력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20명이 포함되어 있음
  - 4급 7명, 5급 5명, 6급 35명, 7급 12명, 8급 1명, 전문경력직 1명으로 구성됨

〔표 4-3〕 인천시의회 공무원 정·현원

(2026. 1. 9. 기준, 정원/현원)

구분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 나군	비고
계	140/135	1/1	12/12	21/19	63/60	40/38	1/3	2/2	
의정	29	1	2	4	13	9			
소통	12		1	3	2	5		1	
의사	18		1	4	2	10	1		
입법	14		1	3	7	2	1		
	1				1				교육직
전문	53		6	4	33	10			
	8		1	1	2	2	1	1	교육직

주: 정원 외 인력: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다급 2명, 라급 1명, 공무직 12명, (파견)교육청 3명, (파견)소방본부 1
자료(출처): 인천시의회(2026). 인천시의회사무처 내부자료

❍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는 2021년 116명에서 의원수 증가[5]에 따라 2022년 131명, 2023년 7명 증원 후, 2025년 현재까지 138명으로 동일한 정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 규모 역시 2023년 이후 3.5명으로 동일한 규모를 유지

〔표 4-4〕 인천시 의회사무처의 인력규모 변화(2021~2025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정원	116	131	138	138	138	4.4
의원 1인당	3.1	3.3	3.5	3.5	3.5	2.7

주: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별도
자료(출처): 인천시의회(연도별). 인천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5) 2022년 7월, 인천시의회 의원수는 37명에서 40명으로 증가

③ 예산 구성

❍ 인천시 의회사무처의 2025년 예산은 243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억 4천 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약 1.88% 수준임

-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 대비 의회사무처 예산의 구성비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0.16%로 동일함
- 즉, 예산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시 전체 재정규모 대비 의회사무처의 상대적 비중은 변동 없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됨

- 정책사업비는 85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34.9%를 차지함
- 행정운영경비는 158억 3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5.1%를 차지함
- 전반적으로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되, 의정활동 관련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선택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주요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5] 2025년 인천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비율
총계			24,360	100
정책 사업비	정책사업비 소계		8,520	34.9
	의정활동 수행	- 의정활동 역량제고 - 의정활동 지원 -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5,264	21.6
	홍보 내실화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의정활동 홍보(의회 소식지, 점자 소식기,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및 SNS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1,568	6.4
	의회청사 유지관리	-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 - 전화기 관리 - 의회청사 시설관리	1,651	6.7
행정 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소계		15,839	65.1
	인력운영비	-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1,898	48.8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430	1.7

자료(출처): 인천시의회(2025). 2025년도 인천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정책사업의 세부 구조는 2024년과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의정활동 수행, 홍보 내실화, 의회청사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됨

- 정책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은 의정활동 수행 분야(52억 6천 4백만원, 21.6%)로, 의정활동 역량제고 및 지원 관련 사업에 재원이 집중됨
- 홍보 내실화 분야는 15억 6천 9백만원(6.4%), 의회청사 유지관리 분야는 16억 5천 1백만원(6.8%)이 편성되어, 정책사업비 내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함
- 이는 정책사업비가 특정 신규 분야 확대보다는, 기존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최근 5년간 인천시의회사무처의 예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예산 규모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의 변화를 살펴봄
- 2021년 71억 4천 1백만원에서 2025년 89억 4천 9백만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함
- 의원 1인당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2021년 1억 9천 3백만원에서 2025년 2억 2천 4백만원으로 연평균 약 3.8% 증가함

〔표 4-6〕 인천시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총액	계	7,141	8,835	9,333	9,605	8,949	5.8
	정책사업	6,712	8,429	8,912	9,193	8,520	6.1
	기본경비	429	406	421	412	429	0.0
의원 1인당	계	193	227	233	240	224	3.8
	정책사업	181	211	223	230	213	4.2
	기본경비	12	11	11	10	11	-2.8

주: 예산 총액은 인력운영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만 살펴봄
자료(출처): 인천시의회(연도별). 인천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① 조직 구성

○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2026년 기준, 사무처장 아래 1국 7과 1협력관 12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됨

- 의정국 아래 7개 과는 의사과, 언론홍보과, 운영지원과, 법제과, 재정분석과, 인사과, 현장민원과로 구성, 7개 과 아래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력관 조직으로는 교육협력관이 설치되어 있음
- 12개 전문위원실은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 교통, 교육, 예산결산특별로 구성

〔그림 4-2〕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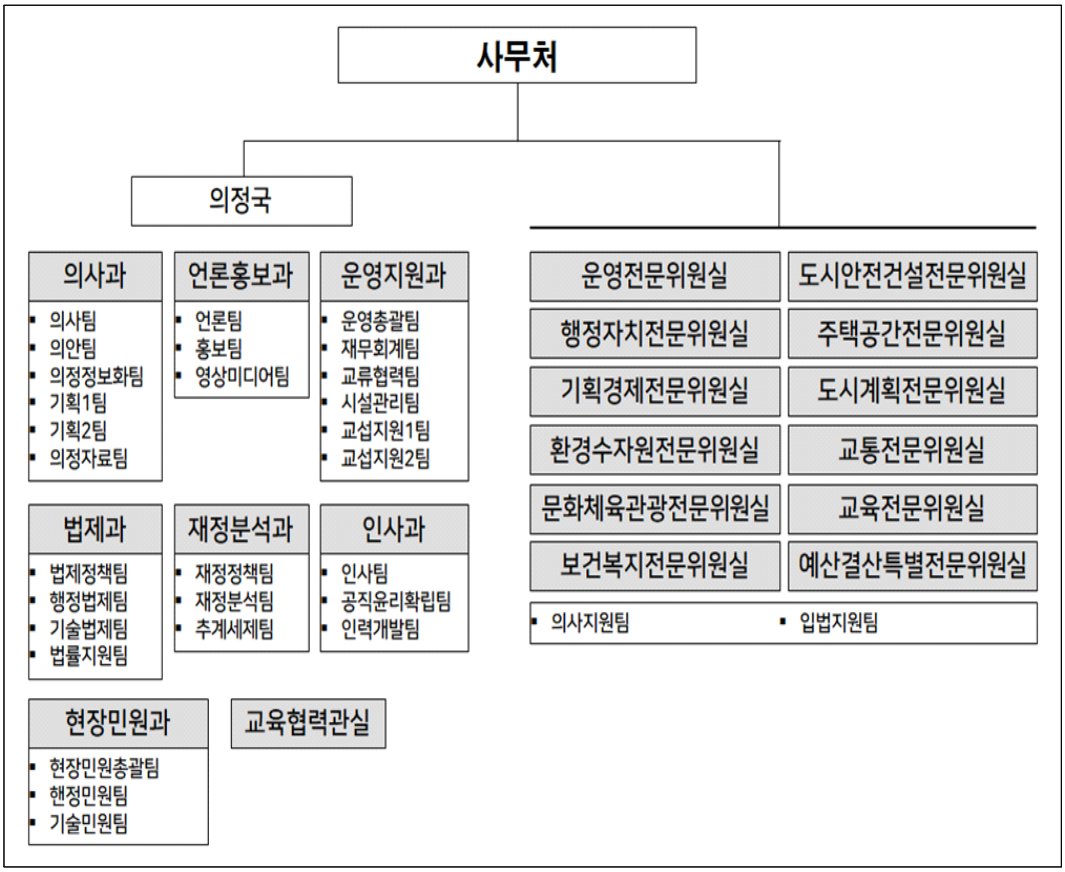

주: 2026년 2월 9일, 검색 기준
자료(출처):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서울시의회 사무처 조직은 2025년 7월 4일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과거 6 담당관 체제에서 의정국 아래 과 중심 체계로 개편됨

- 의정국은 사무처 전반의 업무 조정과 조직 관리 기능을 담당하며, 사무처장 직속 하에 집중되던 통솔 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신설됨
- 기존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체제에서 '담당관'과 '실'을 과로 조정하여 7과 체계로 전환됨
- 시민권익담당관은 폐지되었으며, 입법담당관은 법제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분석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현장민원과로 개편됨

○ 7개 과 중, 법제과, 재정분석과에는 행정인력 외에 분야별 자치법규 입안 지원, 예·결산 분석 및 예산·재정 관련 제도·정책 현안 분석, 의안의 비용 추계 및 분석을 위해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추계분석관을 두고 있음

○ 전문위원실은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전문위원실은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이라는 2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의사지원팀은 상임위원회 운영, 회의 지원,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의사지원팀장 아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있음
- 입법지원팀은 조례안 검토, 정책 검토, 입법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위원 아래 입법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음

○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4-7〕 서울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	
의사과	■ 의사운영, 본회의 일정 및 회의 진행 등 ■ 청소년의회교실 및 본회의장 방청 등 ■ 의안·청원 및 의원요구자료 관리, 회의록 작성·배부	■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 자료 수집·관리 ■ 의회 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
언론홍보과	■ 의회 언론 보도 및 홍보 등 ■ 의회소식지 및 영상홍보물	■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 SNS 운영 및 연설문 작성 등
운영지원과	■ 의회 예산, 결산, 계약, 물품관리 등 ■ 의원 등록, 교육연수 및 후생지원 등 신상관리 ■ 의원 국제교류, 표창 등	■ 청사시설물 유지, 청사방호, 차량관리 등 ■ 교섭단체 운영 행정지원
법제과	■ 입법·정책지원, 정책위원회 운영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의회 관련 쟁송, 입법·법률 고문 운영 등	■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입법조사회담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및 의정모니터 운영
재정분석과	■ 시·교육청 예산안, 결산, 기금 운용 등 분석 ■ 시·교육청 사업평가 및 재정소요 분석 등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사과	■ 인사제도 및 사무처 조직관리 ■ 직원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직원 징계, 검·경 수사기관 및 감사언 등 감사기관	■ 복무, 재산등록, 의원 및 직원 청렴도 제고 ■ 직원 교육훈련, 보수 및 복리후생 등
현장민원과	■ 민원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 각종 민원의 접수·처리 및 이첩 등 ■ U-신문고(의회 신문고) 등 민원처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 ■ 민원처리 결과 및 사후관리 등
전문위원	■ 각종 의안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등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	■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 의안·청원 관련 자료수비, 연구, 검토 등

자료(출처): 서울시의회(2025). 서울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② 인력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는 2025년 9월 기준 정원 429명, 현원 419명임

- 정원 기준 인력 구성은 일반직 공무원 253명(59.0%), 일반임기제 공무원 167명(38.9%), 별정직 공무원 9명(2.1%)임

○ 일반직의 직급별 구성은 정원 기준, 3급 1명, 4급 7명, 5급 36명, 6급 이하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직은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으로 구분됨

- 행정직군은 정원 198명으로, 4급 1명, 5급 7명, 6급 이하 190명으로 구성됨
- 기술직군은 정원 35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34명으로 구성됨
- 전문경력관은 정원 4명으로 전원 전문경력관 직위로 배치됨
- 관리운영직군은 정원 16명으로 구성됨

○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임기제(1~4호) 12명, 5급 19명, 6급 이하 13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4급 2명, 5급 이하 7명으로 배치되어 있음

〔표 4-8〕 2025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현원 현황 (2025. 9. 1 기준, 정·현원)

구분	합계	일반직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3급	4급	5급	6급 이하	4급	5급	6급 이하		
정원	429	253	1	7	36	154	1	1	33	4	16
현원	419	250	1	7	34	148	1	1	34	4	20
과부족*	△10	△3	-	-	△2	△6	-	-	+1	-	+4

구분	일반 임기제				별정직		
	소계	개방형 (1,4호)	5급	6급 이하	소계	4급	5급 이하
정원	167	12	19	136	9	2	7
현원	160	12	19	129	9	2	7
과부족*	△7	-	-	△7	-	-	-

주: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한시임기제 3명 별도
자료(출처): 서울시의회(2025). 서울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는 2021년 356명, 2022년 401명, 2023년 429명, 2024년 429명, 2025년 42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같은 기간 일반직 공무원은 216명에서 2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131명에서 167명으로 확대됨
- 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 규모 역시 2021년 3.2명에서 2025년 3.8명으로 증가함

〔표 4-9〕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인력규모 변화(2021~2025년)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정원	356	401	429	429	429	4.8
일반직	216	233	244	252	253	4.0
일반임기제	131	159	176	168	167	6.3
별정직	9	9	9	9	9	-
의원 1인당	3.2	3.6	3.8	3.8	3.8	4.3

주: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별도
자료(출처): 서울시의회(연도별).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③ 예산 구성

○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2025년 예산은 418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천 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4%임

- 2024년 예산은 378억 9천 2백만원이었으며, 이는 최근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임

○ 2025년 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행정운영비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책사업비는 399억 5천 8백만원(95.5%)으로, 2024년 360억 2천 4백만원에서 39억 3천 4백만원(10.9%) 증가함
-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 18억 6천 8백만원에서 소폭 증가한 18억 9천만원(4.5%)으로, 증가율은 1.2%임

○ 정책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의회운영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33.6%를 차지하는 140억 9천 6백만원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사업이 97억 4천 8백만원(23.29%), 의회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97억 6천만원(23.22%)으로 나타남

○ 2025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분야별 예산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10〕 2025년 서울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비율
총계			41,848	100
정책사업비	정책사업비 소계		39,958	95.48
	의회운영 사업	- 의회운영 지원, 의회 인사관리 운영,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의원수첩 등 제작, -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의정활동수행비 - 윤리의식 향상 및 청렴도 평가 대비 - 단기국외훈련, 장기국외훈련	14,096	33.68
	의회청사 환경개선	- 의회청사 유지관리,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의회청사 시설개선,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9,760	23.22
	국내 · 외 교류사업	-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 의정활동 교류	596	1.42
	의정활동 홍보 사업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의회 누리집 운영, 영상자료시스템 운영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시민 여론조사 운영	9,748	23.29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 회의록 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의정정보화 지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2,850	6.81
	입법활동지원 사업	-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2,031	4.85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	-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울시의회형 온라인 커뮤니티 빅데이터 분석	595	1.42
	의정민원지원 사업	-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의정모니터 운영 - 의회 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 대학생 인턴십 운영	282	0.67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소계		1,890	4.52
	기본경비	급량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직원여비, 부서운영비 등	1,890	4.52

자료(출처): 서울시의회(2025). 서울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인천시의회, 경기도의회와 달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단순 항목 기준 비교 시 정책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예산 구조 비교 시에는 각 의회의 예산 분류 기준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예산 규모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의 변화를 살펴봄
- 2021년 374억 9백만원에서 2025년 418억 4천 8백만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함
- 의원 1인당 예산규모도 2021년 3억 4천만원에서 2025년 3억 7천 4백만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함

〔표 4-11〕 서울시 의회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총액	계	37,409	38,173	35,720	37,892	41,848	2.8
	정책사업	35,798	36,604	33,897	36,024	39,958	2.8
	기본경비	1,611	1,569	1,823	1,868	1,890	4.1
의원 1인당	계	340	341	319	338	374	2.4
	정책사업	325	327	303	322	357	2.3
	기본경비	15	14	16	17	17	3.6

자료(출처): 서울시의회(2025). 서울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3) 경기도의회 사무기구

① 조직 구성

❍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2026년 기준, 사무처장 하에 1국 8과, 14개 전문위원실 체제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의정국 아래 8개 과로 총무과, 인사과, 언론홍보과, 디지털 의사과, 공간정보화과, 법제과, 예산분석과, 의정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과 단위 하부조직으로 총 29개 팀이 편제되어 있음
  - 그 외, 총무과의 경우 정책수석비서관, 교육수석비서관, 행정수석비서관, 재난안전비서관실이 구성
- 법제과와 예산분석과에는 입법지원, 예결산 분석 및 비용 추계를 위한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을 두고 있음

❍ 전문위원실은 14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전문위원실은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이라는 2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임
- 행정지원팀은 상임위원회 운영, 회의 지원,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지원팀장 아래 일반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음
- 정책지원팀은 조례안 검토, 정책 검토, 입법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위원 아래 입법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음

❍ 또한,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회사무처 의정국 아래 의정지원과에 배치되어 있음.

〔그림 4-3〕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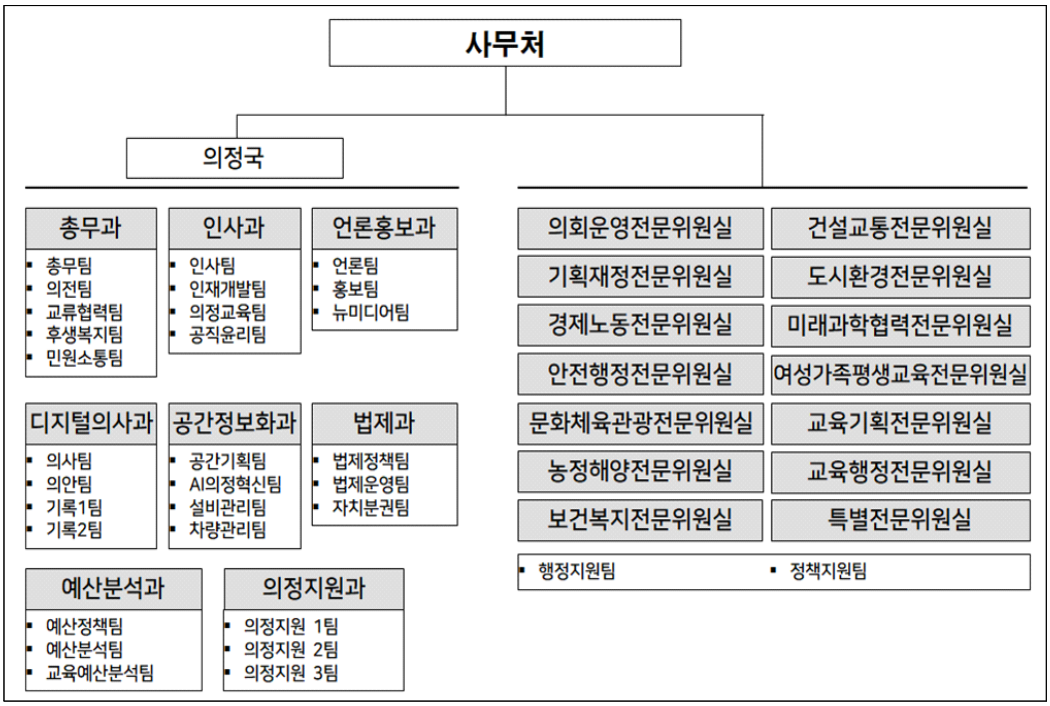

주: 1) 2026년 2월 9일, 검색 기준
2) 총무과의 경우 5개 팀 외, 정책수석비서관, 교육수석비서관, 행정수석비서관, 재난안전비서관실 배치
자료(출처):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개편되어 옴

- 제9대 의회(2017년) 기준 5개 담당관 체제에서 출발하여 2018년에는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되어 6개 담당관 체제로 확대되었으며,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인 2019년에는 7개 담당관 체제로 개편됨

  • 기존 의정지원담당관이 폐지되고, 도민권익담당관과 협치지원담당관이 신설됨

○ 이후 2025년 7월, 이후 2025년 조직 개편을 통해 사무처 조직은 담당관 중심 체제에서 국·과 중심 체제로 전환됨

- 기존 '담당관-팀' 체계를 폐지하고, '1처 1국 8과 33팀' 체계로 개편이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의정국(3급 직제) 신설이 추진되었으며, 공간정보화과를 신설하여 의회 시설 관리 기능과 정보화 기능을 통합함

○ 전문위원실과 팀 단위 조직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전문위원실의 경우 제9대 의회 기준 12개에서 제10대 의회 시기 13개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이후 추가 조정을 거쳐 2025년 기준 14개 전문위원실 체제를 확립함
- 팀 조직은 2017년 16개에서 2018년 17개, 2019년 21개, 2020년 22개, 2021년 25개, 2022년 29개를 거쳐 2025년 현재 33개 팀으로 확대됨

○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4-12〕 경기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	
총무과	■ 사무처 주요 업무 계획 및 조정 ■ 의회사무처 조직에 관한 사항 ■ 의전, 국제교류,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	■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복리후생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 등
인사과	■ 공무원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 공무원 평정, 평가, 포상, 징계 사항 ■ 공무원 임용 시험 및 교육훈련	■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반부패 청렴 시책 업무 ■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복무, 재산등록, 겸직 허가 등
언론 홍보과	■ 언론홍보 기본계획 수립, 보도자료, 취재 등 ■ 의정활동 홍보, 홍보물 및 간행물 등 ■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사진촬영 등	■ 미디어 홍보계획 수립, 홍보 콘텐츠 개발, 온라인매체 의정홍보 등 ■ 출입기자 취재지원 및 브리핑룸 운영 등
디지털 의사과	■ 회기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 본회의 운영 및 의사 운영, 교섭단체 협의 ■ 의안접수 및 회부, 이송 등	■ 청소년의회교실, 청년행정인턴, 의정 도민 참여단 운영 등 ■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사청문회 지원 ■ 디지털의정 추진, 의안정보시스템 운영 등
공간 정보화과	■ 청사시설 기획 관련 사항 ■ 청사 시설 유지관리, 차량유지 및 관리 등 ■ 의회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리	■ 의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회의장 및 회의실 영상, 음향 시스템 운영 ■ 의회방송 송출 시스템 운영 관리 등
법제과	■ 의회입법정책 등 장기·현안과제 조사 분석 지원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조사, 분석, 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 ■ 의정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 조사 자문 등	■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 ■ 집행부 발의 안건 등 검토 지원 ■ 상임위 요청 조례안 입안 검토, 법제지원 등 ■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예산분석과	■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 분석 ■ 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등	■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 국내외 지방재정 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 등 ■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
의정지원과	■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 ■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 정책지원관 평가	■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사항 등 ■ 정책제안 및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 각종 의안 등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 의사진행 보좌 등 ■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자료(출처): 경기도의회사무처 홈페이지(2026년 2월 9일 검색)

○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확대된 의정 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과 단위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음

- 특히, 디지털 의사, 공간정보화, 예산분석, 법제 등 기능을 과 단위로 독립 편제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구조적으로 강화한 특징을 지님

② 인력 구성

○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력은 2025년 2월 기준 정원 489명, 현원 465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중 일반임기제 포함 일반직 공무원의 현원은 356명(76.6%), 정원외 인력(시간선택제·무기계약직)은 109명(23.4%)임

○ 직급별로는 6급과 7급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급, 4급 순으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음

- 반면 8급과 9급 공무원 인력은 상대적으로 소수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력 구조는 하위직급 중심의 피라미드형 구조보다는 중간 직급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음

〔표 4-13〕 2025년 경기도 의회사무처 정·현원 현황

(2025. 2월 기준, 정·현원)

구분	합계	일반직 (일반임기제)									정원외		
		소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소계	시간선택제	무기계약
정원	489 (140)	377 (140)	1 (1)	22 (1)	59 (19)	182 (103)	99 (14)	13 (2)		1	112	69	43
현원	465 (130)	356 (130)	1 (1)	22 (1)	48 (18)	172 (94)	78 (14)	29 (2)	5	1	109	66	43

주: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한시임기제 3명 별도

자료(출처): 경기도의회(2025). 경기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 최근 5년 간의 경기도 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21년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총원은 385명이었으나, 2025년 기준 489명으로 연평균 6.2% 증가함
  - 같은 기간 정원은 267명에서 377명으로 110명(41.2%) 증가하였으며, 정원외 인력은 118명에서 112명으로 6명(5.1%) 감소함

○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 규모는 2021년 2.7명에서 2025년 3.1명으로 증가함

〔표 4-14〕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인력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총원	385	450	445	482	489	6.2
정원	267	319	328	371	377	9.0
일반직	198	247		225	237	4.6
임기제	69	72		146	140	19.3
정원 외	118	131	117	111	112	-1.3
의원 1인당	2.7	2.9	2.9	3.1	3.1	3.5

자료(출처): 경기도의회(연도별).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③ 예산 구성

○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2025년 예산은 1,094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969억 1천 6백만원) 대비 125억 3천 9백만원(12.9%) 증가함

- 2025년 예산은 정책사업비 608억 2천 1백만원(55.6%)과 행정운영경비 486억 3천 4백만원(44.4%)로 구성됨

○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분야별 예산은 다음 표와 같음

- 정책사업 예산은 2024년 505억 8천 2백만원에서 2025년 608억 2천 1백만원으로 20.24%의 증가율을 기록함
-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2024년 463억 3천 4백만원에서 4.96% 증가한 486억 3천 4백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율에 비해 정책사업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5〕 2025년 경기도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비율
총계			109,455	100
정책사업비	정책사업비 소계		60,821	55.6
	의회운영 지원	- 의회운영 및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 - 차량 유지관리,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민활동비 - 회계계약관리, 의정지원인력 지원, 의정지원차량 구매 및 임차 - 후생복지지원, 선진적 의정지원,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운영	19,595	17.9
	의원활동비	- 의정지원 기준경비	16,055	14.7
	의정지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	399	0.4
	선진적 의정 지원을 위한 인재육성	- 인사업무 추진, 모범공무원 등 포상 지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공무원 국외훈련 지원, 청렴한 공직윤리 업무 추진	910	0.8
	의정홍보 지원	-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생활매체 의정홍보,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수렴, 의정홍보 역량강화, 도민소통 의정홍보, 홍보대사 운영,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 미디어 홍보,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의정관 경기마루 운영, 경기도의회사 편찬	15,587	14.2
	의사운영 지원	- 본회의 운영 지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지원, 청년행정인턴 운영, 의정 도민참여단 운영,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의안 접수 및 배부, 기록업무 지원, 의정정보화 추진, 의정 정보시스템	3,578	3.3

구분			예산액	비율
		운영관리, 정보화위원회 운영, 의회 홈페이지 운영, 디지털 의정 역량강화,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도입, 정보통신 유지관리,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방송시스템 운영		
	의정지원 (의정정책담당관)	-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 교육연수 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상담소 운영, 서울사무소 운영, 의정정책추진단 운영	2,083	1.9
	입법활동 지원	- 입법운영 지원, 입법정책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	2,127	1.9
	예산분석 지원	- 예산분석, 예산정책 활동지원,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	487	0.4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소계		48,634	44.4
	인력운영비	-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46,786	42.7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848	1.7

자료(출처): 경기도의회(2025).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 정책사업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의회운영 지원(17.9%)임

- 다음으로 의원활동비(14.7%), 의정홍보 지원(14.2%)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주요 항목의 비중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액된 사업은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2024년 1억 3천 1백만원에서 2025년 4억 8천 7백만원으로 271.8% 증가함
- 의회운영 지원은 2024년 11.2%에서 2025년 17.9%로 6.7%p 증가함
- 반면 의원활동비는 2024년 16.3%에서 2025년 14.7%로 1.6%p 감소하였으며, 의정홍보 지원 역시 2024년 16.9%에서 2025년 14.2%로 2.7%p 감소함

○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예산 규모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의 변화를 살펴봄
- 2021년 475억 6천 2백만원에서 2025년 626억 6천 9백만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함
- 의원 1인당 예산규모도 2021년 3억 3천 7백만원에서 2025년 4억 2백만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함

〔표 4-16〕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총액	계	47,562	40,969	46,554	52,458	62,669	7.1
	정책사업	46,155	39,433	44,877	50,582	60,821	7.1
	기본경비	1,407	1,536	1,677	1,876	1,848	7.1
의원 1인당	계	337	263	298	336	402	4.5
	정책사업	327	253	288	324	390	4.5
	기본경비	10	10	11	12	12	4.4

주: 예산 총액은 인력운영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만 살펴봄
자료(출처): 경기도의회(연도별).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4) 부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① 조직 구성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는 2025년 7월 기준, 사무처장 아래 5담당관, 7 전문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담당관으로는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으로 구성되며, 담당관 아래 총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7개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 기획재정, 행정문화, 복지환경, 건설교통, 해양도시안전, 교육으로 구성됨

〔그림 4-4〕 부산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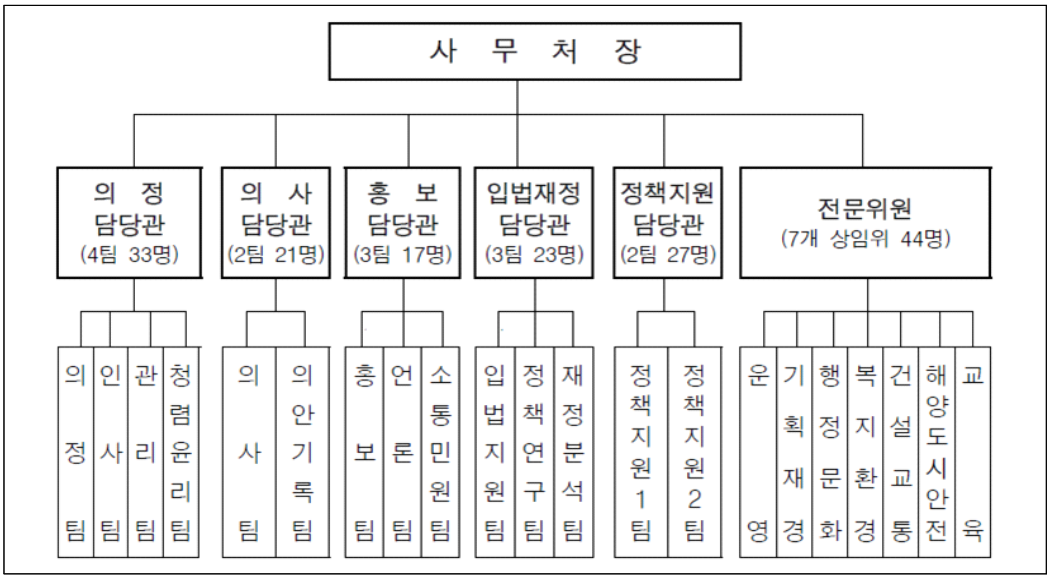

자료(출처): 부산시의회(2025),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는 담당관 중심의 기능별 조직 구조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전담 구조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광역의회 표준 유형에 해당하는 '사무처장-담당관-전문위원' 체계라 할 수 있음

○ 또한,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정책연구위원이 존재함

- 정책지원담당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그 외, 입법재정담당관에 정책연구팀과 재정분석팀을 두고 분야별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책연구위원을 운영하고 있음

○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4-17〕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	
의정정책관	■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 의원 지원 사무, 부울경 광역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등	■ 사무처 직원 인사·복무·포상·교육·채용 및 노조 관련 사항 ■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 ■ 의회 소관 예산·결산 사항 ■ 의회청사 시설·장비 관리 및 의정정보화 업무
의사담당관	■ 의사(정례회, 임시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지원 및 관리 ■ 의회교실 운영,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 각종 의안 접수, 배부, 이송 등 처리 관리 ■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배포, 열람 등 ■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관리, 주민조례청구
홍보담당관	■ 의정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정 간행물 발간 및 의정뉴스·홍보영상물 ■ 의회 홈페이지 및 시의회 SNS 운영관리	■ 의정자료실 및 홍보관, 의회 마당 운영 ■ 연설물, 인터뷰 자료 작성 및 촬영, 제공 ■ 청원·진정 민원의 접수·처리, 통계분석 관리
입법재정담당관	■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입법안, 의안 검토 및 지원	■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발굴, 조사, 분석 ■ 의안과제에 대한 자료 수립, 분석 및 지원 ■ 예산, 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
정책지원담당관	■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 및 감사, 예산결산 심의, 시정질문 등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 의원연구단체 지원 ■ 입법 관련 정책연구용역 등
전문위원	■ 위원회 의사활동계획 수립 ■ 위원회 의안심사, 검토보고 및 의사진행보좌 ■ 위원회 의안심사자료 수립, 조사, 연구	■ 위원회 소관 청원, 진정서 심사 검토 ■ 기타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 업무

자료(출처): 부산시의회(2025), 부산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② 인력 구성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는 2025년 7월 기준 정원 164명, 현원 166명임

- 정원 대비 현원은 2명 초과 상태로, 전체 정원 대비 충원율은 101.2% 수준임

○ 인력구성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구분됨

- 정원 기준 일반직 공무원은 127명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37명으로 22.6%임

- 현원 기준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은 129명,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37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즉,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되, 일정 비율의 임기제 인력을 활용하는 혼합형 인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전반적으로 중간관리직과 실무직 중심의 인력 배치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부산시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2025년 7월 1일 기준)

구분	계	일반직(별정 포함)					일반 임기제			
		소계	2급	4급	5급	6급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정원	164	127	1	12	21	93	37	1	26	10
현원	166	129	1	12	19	97	37	1	26	10
과원	2	2	-	-	△2	4	-	-	-	-

주: 별도인력(55명): 교육청 10, 부산시 1, 의장협의회 2, 공로연수 6, 휴직 7, 공무직 14, 시간선택제 13, 교육2
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2025),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 최근 5년 간의 부산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21년 부산시 의회사무처의 총 정원은 125명이었으나, 2025년 164명으로 연평균 7.0% 증가함
  -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1년 107명에서 2025년 127명으로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임기제는 2021년 18명에서 2025년 37명으로 연평균 19.7% 증가함

❍ 또한, 부산시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 규모는 2021년 2.7명에서 2025년 3.5명으로 증가함

〔표 4-19〕 부산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정원	125	141	156	157	164	7.0
일반직	107	116	119	119	127	4.4
임기제	18	25	37	38	37	19.7
의원 1인당	2.7	3.0	3.3	3.3	3.5	7.0

자료(출처): 부산시의회(연도별). 부산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전문위원실 인력은 44명(26.5%)으로 전체 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구조가 인력 배치에서도 명확히 반영됨
- 담당관 조직 중에서는 의정정책관(33명, 19.9%)과 정책지원담당관(27명, 16.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책 조정 및 의원 지원 기능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의사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역시 일정 규모의 인력이 배치되어 의사운영, 입법·재정 지원, 대외 홍보 기능을 분담하고 있음

〔표 4-20〕 부산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의정정책관	33	19.9
의사담당관	21	12.7
홍보담당관	17	10.2
입법재정담당관	23	13.9
정책지원담당관	27	16.3
전문위원실(7개)	44	26.5
합계	166	100.0

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 한편,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정원 외 인력을 통해 의정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정원 외 인력은 총 55명으로, 교육청 파견 10명, 부산시 파견 1명, 의장협의회 2명, 공로연수 6명, 휴직 7명, 공무직 14명, 시간선택임기제 13명, 교육 파견 2명으로 구성됨

③ 예산 구성

○ 부산시 의회사무처의 2025년 예산은 244억 6백만원으로 2024년 229억 3천 2백만원 대비 약 15억 7천 7백만원(6.8%) 증가함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예산은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며,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 증가는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모두에서 발생하였음

- 정책사업비 증가는 의정활동 지원 기능 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행정운영비의 증가는 인력운영비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2025년 예산에서 정책사업비는 94억 2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2%, 행정운영경비는 150억 8천 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8%를 차지하여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더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정책사업비는 단일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되며, 의정활동 지원, 시설·장비 운영관리, 의회 운영 기반 유지 등 의정지원 기능에 투입됨
-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144억 6천 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3%를 차지하며, 기본경비는 6억 2천 4백만원으로 2.5% 수준임
- 즉,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비중이 매우 높아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를 띰

〔표 4-21〕 2025년 부산시 의회사무처 분야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비율
계	24,406	100
사업비 (의정활동지원, 의사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입법정책연구, 정책지원연구)	9,320	38.2
인력운영비	14,461	59.3
기본 경비	624	2.6

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2025).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 또한, 최근 5년간 부산시의회 사무처의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예산 규모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의 변화를 살펴봄
- 2021년 66억 2천 6백만원에서 2025년 99억 4천 4백만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함
- 의원 1인당 예산규모도 2021년 1억 4천 1백만원에서 2025년 2억 1천 2백만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함

〔표 4-22〕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총액	계	6,626	8,435	8,542	9,216	9,944	10.7
	정책사업	6,031	7,895	8,082	8,666	9,320	11.5
	기본경비	595	540	460	550	624	1.2
의원 1인당	계	141	179	182	196	212	10.7
	정책사업	128	168	172	184	198	11.5
	기본경비	13	11	10	12	13	1.2

주: 예산 총액은 인력운영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만 살펴봄
자료(출처): 부산광역시의회(연도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5) 대구광역시의회 사무기구

① 조직 구성

○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는 2025년 기준, 사무처장 아래 1정책관 4담당관 7전문위원실로 구성됨

○ 담당관 조직은 의정정책관, 인사윤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총 10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의정정책관 아래 총무팀과 관리팀을 두고 있음
- 인사윤리담당관에 인사팀과 공직윤리교육팀, 의사담당관에 의사팀과 의안기록팀, 홍보담당관에 공보팀과 시민소통팀, 정책분석담당관에 정책연구1팀과 정책연구2팀이 있음
  - 정책분석담당관에는 입법정책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 2개 팀으로 구성됨

- 행정지원팀은 소관 위원회별 의안검토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
- 정책지원팀은 소관 위원회별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음

〔그림 4-5〕 대구시의회 사무처 조직도

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2025)

○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4-23〕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	
의정정책관	■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원등록, 관리, 의전 및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 윤리, 신분, 행동강령	■ 의원 대외활동, 공무출장, 연찬회 등 지원 ■ 표창 및 상훈,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의정활동 연설문 작성 및 지원 ■ 의회 청사 유지관리, 보안 및 방호 등
인사윤리 담당관	■ 인사제도 종합기획 및 운영 ■ 공무원 임용, 전출입, 인사교류, 징계 등 ■ 인사위원회, 평정, 상훈 등	■ 공무원 후생복지, 건강검진 등 ■ 공무원 반부패, 청렴, 윤리 정책 수립 및 시행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훈련계획 등
의사 담당관	■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 ■ 시정질문, 5분 자유 발언 등	■ 청원 접수, 주민조례 청구, 각종 의안 접수 및 회시 ■ 회의록 녹음 및 속기 등
홍보 담당관	■ 의정 공보활동 계획 수립 ■ 보도자료 제공 및 관리 ■ 의회 홍보물 발행 및 의정활동 간행물 발간	■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자료 지원 ■ 회의장 외부녹음, 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 인터넷 방송시스템 및 영상회의록 시스템 운영 ■ 의회 홈페이지, SNS 등 운영 및 관리
정책분석 담당관	■ 시, 의정 전반의 정책 및 재정분석, 연구 ■ 지방자치제도 연구 ■ 의정활동 관련 현안과제 발굴, 조사, 지원 ■ 의원 요청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 작성	■ 질의서, 건의안, 결의문 등 작성 지원 ■ 세미나, 연찬회, 토론회 등 운영 ■ 정책연구위원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 의원발의 입법관련 검토 및 법제 심사 지원
전문위원	■ 위원회 의안 심사 및 의사진행 ■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 지원 ■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작성 지원 ■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 의원 요구 자료 접수, 처리 ■ 위원회별 청원심사 및 진정, 민원처리 ■ 행정사무감사, 조사 ■ 예결산 조사, 분석, 검토 보고 등

자료(출처): 대구시의회(2025). 대구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 또한,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두고 있음

-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전문위원실 내 정책지원팀에 배치하고 있으며, 입법정책 연구분석 전문인력은 정책분석담당관실 정책연구 1팀, 2팀에 배치하여 지원함

〔표 4-24〕 대구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 및 연구분석 인력 운영 현황

구분	정책지원관	연구·분석 전문인력
부서	전문위원실 (16명)	정책분석담당관실 (15명)
직무	■ 의원 입법 지원(초안 작성) ■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담당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입법지원(조례(안) 검토 및 법제 심사 등) ■ 연구분석 기초자료 제공(조례, 시정질문, 5분 자유 발언 등) ■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등에 대한 정책 질의서 작성 지원

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2025),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② 인력 구성

○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는 2025년 2월 17일 기준 정원 126명, 현원 120명임

- 정원 대비 현원은 6명 부족한 상태로, 전체 정원 대비 충원율은 95.2% 수준임

○ 인력 구성은 별도의 임기제 구분 없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체계로 편성되어 있음

- 다만, 정원 외 근무 인력으로 파견·시간선택임기제·공무직·기간제 인력이 일부 활용되고 있음
- 정원 외 근무 인력은 총 29명으로 파견공무원 14명(대구시 4명, 교육청 10명), 시간선택임기제 6명, 공무직 8명, 기간제 1명임

○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중간관리직 및 실무 핵심 직급인 5급과 6급에서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위직급(7급·8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표 4-25〕 대구시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2025년 10월 기준)

구분	계	2~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133	1	1	11	23	50	38	9
현원	124	1	1	10	21	48	38	5

주: 현원 외(30명): 파견 14, 시간선택임기제 7, 공무직 8, 기간제 1
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2025),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 최근 5년 간의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21년 대구시 의회사무처의 총 정원은 92명이었으나, 2025년 133명으로 연평균 9.7% 증가함
- 대구시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 규모는 2021년 3.0명에서 2025년 4.2명으로 증가함

〔표 4-26〕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정원	92	113	124	126	133	9.7
의원 1인당	3.0	3.5	3.9	3.9	4.2	8.8

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연도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전문위원실 인력이 전체 현원의 44.2%(5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구조가 인력 배치에서도 명확히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한편 의정정책관실과 정책분석담당관실을 합산한 정책·기획 기능 인력은 34.1%(41명)로, 정책지원 및 분석 기능에도 일정 수준의 인력이 배치된 상태임

〔표 4-27〕 대구시의회 사무처 부서별 인력 배분 현황(2025년 현원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원	비율
의정정책관	25	20.8
의사담당관	114	11.7
홍보담당관	13	10.8
정책분석담당관	16	13.3
전문위원실	53	44.2
합계	120	100.0

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2025)

③ 예산 구성

○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2025년 예산 규모는 160억 7천 2백만원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예산인 약 10조 9,247억원 대비 0.15% 수준임

○ 의회사무처 예산은 기능 기준에 따라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능별 구성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음

- 정책사업비 71억 7천 1백만원(44.6%), 행정운영경비 89억 1백만원(55.4%)로 구성됨

○ 정책사업비는 의정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회기운영, 의정지원 장비 구축, 의정활동 홍보, 인사관리·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됨

- 특히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27억 2천 2백만원(2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86억 6천 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3.9%를 차지하는 반면, 기본경비는 2억 3천 7백만원(1.5%)로 인력운영비 중심의 구조를 보임

〔표 4-28〕 2025년 대구시 의회사무처 예산 구성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비율
총계			16,072	100.0
정책 사업비	정책사업비 소계		7,171	44.6
	의정활동 지원	- 의정활동비 지원	2,722	22.8
		- 국내외 선진도시의회 교류사업	357	
		- 의원부담금	235	
		-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202	
		- 의정활동 자료수집	154	
	회기운영	-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225	3.3
		- 본회의 운영	63	
		-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243	
		- 증인 출석여비	0.1	
	의정지원 장비구축	- 청사 환경정비	113	8.7
		- 근무환경개선 장비구입	160	
		- 의정지원 차량유지비	105	
		-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617	
		- 의정지원 시설장비 유지	409	
	의정활동홍보	-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883	5.6
		- 의정활동 촬영 차량 유지비	14	

구분			예산액	비율
	인사관리	- 공정한 인사관리	21	4.2
		- 시험관리	10	
		-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	42	
		- 맞춤형복지 운영	363	
		- 연급지급금	41	
		- 직원 후생복지 지원	13	
		- 공무원 포상	1	
		- 국내교육훈련	131	
		- 국외교육훈련	33	
		- 선진행정 체험 연수	12	
행정 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소계		8,901	55.4
	인력운영비		8,664	53.9
	기본경비		237	1.5

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2025)

❍ 또한, 최근 5년간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예산 규모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를 살펴봄
- 2021년 45억 2천 1백만원에서 2025년 74억 7백만원으로 연평균 13.1% 증가함
- 의원 1인당 예산규모도 2021년 1억 4천 6백만원에서 2025년 2억 3천 1백만원으로 연평균 12.2% 증가함

〔표 4-29〕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총액	계	4,521	5,832	6,154	6,951	7,407	13.1
	정책사업	4,309	5,591	5,898	6,707	7,171	13.6
	기본경비	212	241	256	244	236	2.7
의원 1인당	계	146	182	192	217	231	12.2
	정책사업	139	175	184	210	224	12.7
	기본경비	7	8	8	8	7	1.9

주: 예산 총액은 인력운영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만 살펴봄
자료(출처): 대구광역시의회(연도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① 조직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는 2026년 기준, 사무처장 아래 4 담당관, 8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담당관 조직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구성하여, 그 아래 총 1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총무담당관은 총무·인사·회계·대외협력 기능을 담당하며, 총무팀, 인사팀, 경리팀, 소통협력팀을 두고 있음
- 의사담당관은 본회의 및 위원회 운영, 의사일정 관리, 회의록 작성 등 의사 기능을 담당하며, 의사팀, 기록팀을 두고 있음
- 입법지원담당관은 조례안 검토, 법제 자문, 정책·입법 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입법지원팀, 법제지원1팀, 법제지원2팀, 의정지원팀을 두고 있음
- 홍보담당관은 의정활동 홍보 및 대외 소통 기능을 담당하며, 언론홍보팀, 미디어팀을 두고 있음

〔그림 4-6〕 제주도의회 사무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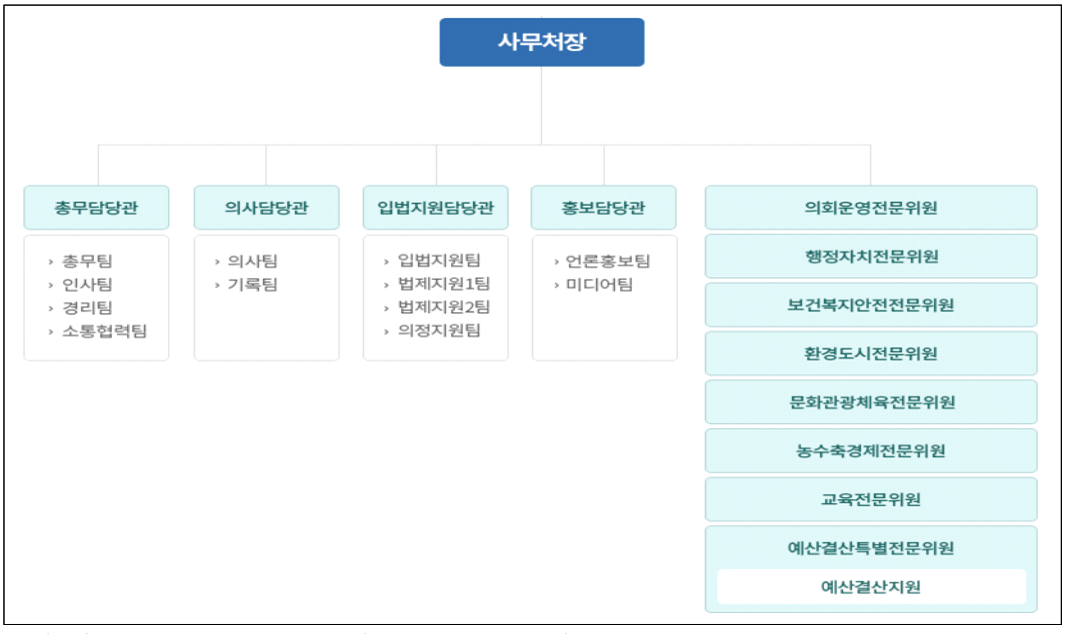

자료(출처): 제주도의회 사무처 홈페이지(2026년 2월 9일 검색)

○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원, 공무원 등이 배치되어 있음

- 전문위원실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임

○ 정책지원관은 전문위원실에 정책연구위원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입법지원담당관에 분야별 정책자료 조사, 분석 및 전망을 위한 연구원을 두고 있음

○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표 4-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부서별 사무분장

구분	주요 업무	
총무담당관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원 등록관리 및 대외활동 지원 ■ 의전행사 및 의원, 직원의 복리후생 ■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원, 직무연찬 등	■ 포상,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 ■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전보, 징계, 복무관리 ■ 보안, 비상계획, 청사방호 및 청원 관리 ■ 의회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사항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 본회의 운영, 전체의원 회의, 위원회 운영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서 등 ■ 의원 서류제출 요구, 서면질문 처리	■ 의안 처리(접수, 회부, 본회의 부의 등) ■ 인사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등 ■ 회의록 작성, 발간, 관리, ■ 영상방송실 운영,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
입법지원담당관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폐 등 ■ 주민 입법 제안, 의회 소송 업무 등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지원, 위원회 요정 조례안	■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의원 연구단체 운영 ■ 입법정책 관련 학술용역 ■ 위원회 또는 의원 요구 입법사항, 입법 관련 조사, ■ 도정현안 분석,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 분석, 비용추계분석 등 정책 분석
홍보담당관	■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 의정활동 홍보, 언론사 의정홍보 취재 지원 ■ 의회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 ■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운영	■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홍보 ■ 홍보물 편집 및 발간 ■ 사진, 영상기록 촬영, 영상콘텐츠 제작 등 ■ 홍보 컨텐츠 개발 및 디자인 등
전문위원	■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 ■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 청원 및 진정서 처리 ■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 위원회 의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회의 방청, 촬영, 녹음, 중계방송 허가 ■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개최 등 ■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 ■ 정책연구위원 사무 등
예결산특별전문위원	■ 도정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석, 평가 ■ 지방재정계획 적정성 분석, 검토 ■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검토 ■ 조례안 비용추계 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산안,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 예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기타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원 지원

자료(출처): 제주도의회 사무처 홈페이지(2026년 2월 9일 검색)

○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는 도의회 차원에서는 상임위원회와 다수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처 조직 차원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전담 체계를 구성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비상설 방식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지역적·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시적 대응 조직을 병행 운영하는 광역의회 사무기구로 정리됨

② 인력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는 2025년 8월 기준 정원 182명, 현원 171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부 직급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정원에 근접한 인력 운영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력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6급과 7급 현원은 각각 49명, 44명으로 전체 일반직·별정직 인력의 과반을 차지함
- 반면 8급과 9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부족하여 하위 직급 결원이 두드러지는 구조임
- 이는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중간 직급 중심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31〕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급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2025년 8월 기준)

구분	총계	일반직 및 별정직								청원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		
정원	182	145	2	11	33	42	42	9	5	1	13	24
현원	171	134	2	11	27	49	39	3	2	1	13	24
과원	△11	△11	-	-	△6	7	△3	△6	△3	-	-	-

주: 시간선택임기제 11명 별도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5),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 또한, 최근 4년 간의 제주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제주시 의회사무처의 총 정원은 178명이었으나, 2025년 182명으로 연평균 0.7% 증가함
- 제주시의회 의원 1인당 사무처 인력 규모는 교육위원 포함시 2022년 4.0명에서 2025년 4.0명으로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표 4-32〕 제주도의회 사무처의 인력 변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정원		-	178	182	182	182	0.7
의원 1인당	교육위원 제외	-	4.5	4.6	4.6	4.6	0.7
	교육위원 포함	-	4.0	4.0	4.0	4.0	0.7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③ 예산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2025년 세출예산 규모는 254억 6백만원으로 편성됨

- 이는 2024년 예산인 242억 9천 5백만원 대비 11억 1천 1백만원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4.6% 수준임

○ 2025년 예산은 의회운영비와 의원의정활동비로 구분할 수 있음

-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 증가는 두 항목 모두에서 발생함
  - 의원의정활동비는 43억 5천 6백만원에서 47억 1천만원원으로 3억 5천 4백만원(8.1%) 증가함
  - 의회운영비는 199억 3천 9백만원에서 206억 9천 6백만원으로 7억 5천 7백만원(3.8%) 증가함

○ 의원의정활동비는 47억 1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5% 수준인 반면 의회운영비는 전체 경비의 81.5%인 206억 9천 6백만원으로 편성됨

- 이는 광역의회 중에서도 인력·조직 운영 중심성이 높은 구조로 해석됨

○ 한편 의회운영비의 경우 인력운영비가 156억 5천 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6%를 차지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기능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

- 이는 제주도의회 사무처 예산이 정책사업 확대보다는 조직 유지·운영을 우선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지표임
- 특히 제주형 자치제도 운영, 교육의원 포함 의회 구조, 행정체제 개편 대응 등으로 인해 상시적 인력 운용 비용이 구조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정책입법활동 예산은 2억 6천 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입법·정책 연구 기능이 전문위원 인력 중심으로 수행되고, 별도의 대규모 사업비 투입보다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내부 지원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타 지자체의 의회 사무처 예산과 달리 시설관리(6억 5천 5백만원, 2.6%) 역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서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청사 유지 관리 수요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구체적인 예산 규모 및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33〕 2025년 제주도의회 사무처 예산 구성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비율
총계		25,406	100.0
의원의정활동비	의원의정활동비 소계	4,710	18.5
	의정활동비	1,080	4.3
	월정수당	1,933	7.6
	의원국내여비	189	0.7
	의원국외여비	237	0.9
	의정운영공통경비	443	1.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93	1.2
	의원역량개발비	31	0.1
	의원정책역량개발비	225	0.9
	의장협의체부담금	124	0.5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155	036
의회 운영비	의회운영비 소계	20,696	81.5
	인력운영비	15,656	61.6
	기본경비	284	1.1

	총무관리	833	3.3
	인사관리	38	0.1
	시설관리	655	2.6
	소통협력	223	0.9
	회의운영	329	1.3
	정책입법활동	269	1.1
	공보관리	1,245	4.9
	미디어홍보	441	1.7
	위원화운영	723	2.8

자료(출처): 제주도의회 2025년도 업무보고(2025)

○ 또한, 최근 5년간 제주의회 사무처의 예산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예산 규모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의 변화를 살펴봄
- 2021년 82억 5천 3백만원에서 2025년 97억 5천만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함
- 의원 1인당 예산규모도 교육위원 포함시, 2021년 1억 8천 3백만원에서 2025년 2억 1천 7백만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함

〔표 4-3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예산규모 변화(2021~202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총액	계	8,253	9,486	9,281	9,106	9,750	4.3
	정책사업	7,983	9,210	8,992	8,816	9,466	4.4
	기본경비	270	276	289	290	284	1.3
의원 1인당 (교육위원 미포함)	계	206	237	232	228	244	4.3
	정책사업	200	230	225	220	237	4.4
	기본경비	7	7	7	7	7	1.3
의원 1인당 (교육위원 포함)	계	183	211	206	202	217	4.3
	정책사업	177	205	200	196	210	4.4
	기본경비	6	6	6	6	6	1.3

주: 예산 총액은 인력운영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비와 기본경비만 살펴봄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

3. 종합 및 시사점

1) 조직 운영 측면의 종합 및 시사점

❖ 조직 운영 종합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체계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기구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직 체계의 차이로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은 사무처장 아래 '국(局)' 단위를 두어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회를 포함하여 인천시와 규모가 비슷한 부산, 대구, 제주도의회의 경우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국 아래 과를 두어 기능별로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하나의 담당관 아래 여러 팀이 혼재된 형태로 구성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은 인천, 서울, 대구, 제주시의회는 전문위원실 내 배치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부산시의회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배치하고 있음
- 다만, 인천시와 같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고 있는 서울, 대구, 제주시의 경우 전문위원실 내 별도의 팀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별도의 전담부서없이 각 전문위원실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구조임
- 의정활동 지원 기구로 인천시의회를 제외한 5개 시도 모두 정책지원 전문 인력 외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등 정책분석 및 연구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법제과와 재정분석과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추계분석관, 경기도의회는 법제과와 예산분석과,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등 조사 및 분석 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음
  - 부산시의회와 대구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각각 입법재정담당관과 정책분석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이라는 전담부서 내 정책연구 인력을 두어 정책연구 및 조사, 분석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경우는 입법담당관과 전문위원실 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등의 명칭이 아닌 행정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4-35〕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조직 구성

구분	의회사무처 조직 구성		의정활동 지원 기구
인천 (40명)	담당관 체제 1정책관, 1실, 3담당관 7전문위원실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실 : 정책지원관
서울 (112명)	국 체제 1국, 7과, 1실, 12전문위원실,	의정국 의사과, 언론홍보과, 운영지원과, 법제과, 재정분석과, 인사과, 현장민원과, 교육협력관실, 전문위원실	• 법제과, 재정분석과: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추계분석관 • 전문의원실 (의사지원팀): 정책지원관 (입법지원팀): 입법조사관
경기도 (156명)	국 체제 1국 8과, 14전문위원실	의정국 총무과, 인사과, 언론홍보과, 디지털의사과, 공간정보화과, 법제과, 예산분석과, 의정지원과, 전문위원실	• 의정지원과 : 정책지원관 • 법제과, 예산분석과: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 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 : 입법조사관
부산 (47명)	담당관 체제 5담당관, 7전문위원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재정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전문위원실	• 정책지원담당관 : 정책지원관 • 입법재정담당관(정책연구팀, 재정분석팀) : 정책연구위원
대구 (32명)	담당관 체제 1정책관, 4 담당관, 7전문위원실	의정정책관, 인사윤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분석탐당관, 전문위원실	• 정책분석담당관실(정책연구 1팀, 2팀) : 연구분석 전문인력 • 전문위원실(정책지원팀): 정책지원관
제주 (45명)	담당관 체제 4담당관 8전문위원실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전문위원실	• 입법지원담당관(의정지원): 연구원 • 전문위원실 : 정책연구위원(정책지원관)

조직 운영 측면의 시사점

○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조직 규모 확대나 기능 분화를 통한 구조 개편보다는 기존 조직 틀을 유지하면서 직급 조정과 명칭 정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옴

- 반면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확대된 의정 수요에 대응하여, 과 단위 기능 분화, 국·과 체계 도입, 입법·재정·디지털·민원 기능의 조직적 독립 등을 통해 조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식의 개편을 추진함

○ 이에 반해,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를 유지하면서, 직급 조정 및 명칭 변경 등 미시적인 조직 조정에 그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담담관 체제 아래 팀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나, 팀 조직이 기능별로 세분화되지 못해 각 팀별로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조직 운영 사례는 이러한 차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줌

- 서울시의회는 사무처 내에 의정국장실과 7개 과, 12개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으며, 각 전문위원실을 다시 의사지원팀과 입법지원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안건 검토, 예산분석, 입법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음
  - 특히 예산정책, 법제, 언론홍보, 현장민원 등 기능을 과 단위로 독립 편제하여 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시민 소통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경기도의회 역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1국 8과, 14개 전문위원실 체제로 확대함
  - 특히 총무, 인사, 언론홍보, 디지털 의사, 공간정보화, 법제, 예산분석, 의정지원 등으로 과를 세분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디지털화·전문화·분업화를 동시에 추진함

○ 반면, 인천시의회는 2026년 기준, 1정책관, 1실, 3담당관, 7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14담당, 7전문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이는 과 단위로 기능을 세분화한 서울·경기 사례와 달리, 입법·예산·홍보·디지털 지원 기능을 분리·전문화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 체계로 볼 수 있음
- 또한 전문위원실 수 역시 상임위원회 수 대비 제한적이어서,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인력·조직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 대구의 경우 전문위원실 내 별도 팀을 두고 운영, 경기도, 부산시는 별도의 과를 두고 운영함

- 인천시의회의 경우 전문위원실 내 별도 전담부서 없이 각 전문위원실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구조임

○ 결국,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의정활동의 전문화·다양화·고도화에 대응하기에는 기능 분화와 조직 확장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은 단순한 직급 조정이나 명칭 변경을 넘어 ① 담당관 중심 구조의 단계적 과 단위 전환 검토, ②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의 점진적 확대, ③ 예산·법제·정책 분석 및 디지털 의사 기능의 선택적 독립 편제,

④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인력 운영 측면의 종합 및 시사점

인력 운영 종합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정원 인력의 규모의 경우 인천은 3.5명으로 유사 규모인 제주(4.6명), 대구(4.2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3.8명)보다 낮고 경기(3.1명)보다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은 인천은 4.4%로 서울(4.8%)과 유사한 수준이나, 경기도(6.2%), 부산(7.0%), 대구(9.7%)의 인력 확충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4-36〕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인력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인천 (40명)	정원	116	131	138	138	138	4.4
	의원 1인당	3.1	3.3	3.5	3.5	3.5	2.7
서울 (112명)	정원	356	401	429	429	429	4.8
	의원 1인당	3.2	3.6	3.8	3.8	3.8	4.3
경기도 (156명)	정원	385	450	445	482	489	6.2
	의원 1인당	2.7	2.9	2.9	3.1	3.1	3.5
부산 (47명)	정원	125	141	156	157	164	7.0
	의원 1인당	2.7	3.0	3.3	3.3	3.5	7.0
대구 (32명)	정원	92	113	124	126	133	9.7
	의원 1인당	3.0	3.5	3.9	3.9	4.2	8.8
제주 (45명)	정원	-	178	182	182	182	0.7
	의원 1인당	-	4.5	4.6	4.6	4.6	0.7
	의원 1인당 (교육 포함)	-	4.0	4.0	4.0	4.0	0.7

자료(출처): 각 시·도별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인력 운영 측면의 시사점

○ 광역의회의 사무처 인력 운영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총 정원은 중간 수준이나, 정원의 확대 수준과 인력 배치의 효율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

- 유사 수준의 대구시의회와 부산시의회의 경우 최근 5년간 정원의 연평균 증감률이 9.7%, 7% 수준으로 확대된 의정 수요에 대응하여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확대된 의정 수요에 대응하여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인력 확충, 입법·재정·정책 분석 전담 인력의 체계적 배치, 팀 단위 정책지원 기능 강화 등 의정활동 지원을 조직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2025년 기준, 정원 429명, 현원 41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직 190명, 기술직 36명, 관리운영직 20명, 전문경력관 4명, 임기제 160명, 별정직 9명으로 직군이 세분화되어 있음

- 임기제 인력이 전체 현원의 약 38%를 차지하며, 입법·재정·정책 분석 전담 인력의 체계적인 배치로 정책지원·전문기능을 유연하게 보완하는 인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법제과, 재정분석과에 행정인력 외, 분야별 입법지원, 예·결산 분석, 정책현안 분석 등을 위해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과, 추계분석관을 두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팀을 분리하여 의사지원팀에 정책지원관, 입법지원팀에 입법조사관을 두고 있음
- 의원 정수 112명 기준, 의원 1인당 약 3.8명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2025년 기준, 정원 377명, 현원 356명이며, 정원외 인력인 시간선택제와 무기계약직 등 112명을 포함하여 정원 총 489명 수준으로 운영함

- 총무·인사·언론홍보·의사·의정정책·입법정책·예산정책·의정지원 기능을 과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 외, 법제과와 예산분석과에 행정인력 외에 입법지원, 예결산 분석 등을 위한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을 두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은 2팀 체제로 행정지원팀은 행정지원 업무, 정책지원팀은 입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을 두고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별도 과로 의정지원과를 두고 있음

- 의원 정수 156명 기준, 의원 1인당 약 3.5명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의회와 대구시의회 등과 비교할 경우에도,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운영상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남

- 대구시의회는 정책분석담당관과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회 간 조정과 정책 기획 기능을 보완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을 2팀으로 구분하여 행정지원팀에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팀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정책분석담당관 내 정책연구 1팀, 2팀을 두어 입법정책 연구분석 전문인력을 운영
- 부산광역시의회는 담당관별로 인력과 업무를 구분하여 정책지원 기능과 의사운영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책지원담당관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입법재정담당관에 정책연구팀과 재정분석팀을 두어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인력 운영

○ 반면,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전문위원실 인력이 상임위원회 수 대비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상태이며, 담당관 조직 내에서 행정·의사·입법·정책 기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전문위원실은 위원회별 안건 검토, 조례·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규모 확대나 기능별 전담 인력 확충보다는 기존 인력이 다수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결국, 인천시의회는 전문위원실의 상대적 인력 부족, 중간관리·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의 취약성으로 인해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특정 직급과 일부 인력에 구조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인천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40명 기준 단순 계산상 의원 1인당 약 3.5명의 지원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 인력 규모 자체가 서울·경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여 입법, 예산분석, 홍보, 디지털 지원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할 전문조직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구조임

- 최근 3급 직위 신설을 통해 조직의 위상을 일정 부분 보강한 점은 확인되나, 이는 직급 체계 조정에 따른 관리 기능 보완에 그친 조치로 실질적인 기능 확충이나 인력 증대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한계를 지님

○ 종합하면,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운영은 총 정원의 부족과 함께 전문 인력 배치 방식과 기능별 인력 분화의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제약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인력의 단계적 확충, 정책·입법·재정 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보강, 담당관 조직 내 기능 과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력 운영의 질적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예산 운영 측면의 종합 및 시사점

예산 운영 종합

○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의정활동 지원 예산(정책사업비+기본경비)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기준, 정책사업비의 규모는 경기(608억 원), 서울(399억 원), 제주(94억원), 부산(93억 원), 인천(85억원), 대구(71억 원) 순으로 인천시의회의 경우 절대적인 규모에서 낮은 수준임
- 의원 1인당 정책사업비의 규모도, 인천은 2.1억 원으로 경기(3.9억 원), 서울(3.5억)으로 매우 높으며, 대구(2.2억 원)과 유사, 부산(1.9억 원)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의회로서의 예산 규모는 낮은 수준임
-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 인천시의회는 6.1%인 반면, 대구 13.6%, 부산 11.5%에 비교하면 의정지원을 위한 예산 투자가 낮은 수준임

〔표 4-37〕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사례 종합: 예산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인천 (40명)	총액	계	7,141	8,835	9,333	9,605	8,949	5.8
		정책사업	6,712	8,429	8,912	9,193	8,520	6.1
		기본경비	429	406	421	412	429	0.0
	의원 1인당	계	193	227	233	240	224	3.8
		정책사업	181	211	223	230	213	4.2
		기본경비	12	11	11	10	11	-2.8
서울 (112명)	총액	계	37,409	38,173	35,720	37,892	41,848	2.8
		정책사업	35,798	36,604	33,897	36,024	39,958	2.8
		기본경비	1,611	1,569	1,823	1,868	1,890	4.1
	의원 1인당	계	340	341	319	338	374	2.4
		정책사업	325	327	303	322	357	2.3
		기본경비	15	14	16	17	17	3.6
경기도 (156명)	총액	계	47,562	40,969	46,554	52,458	62,669	7.1
		정책사업	46,155	39,433	44,877	50,582	60,821	7.1
		기본경비	1,407	1,536	1,677	1,876	1,848	7.1
	의원 1인당	계	337	263	298	336	402	4.5
		정책사업	327	253	288	324	390	4.5
		기본경비	10	10	11	12	12	4.4
부산 (47명)	총액	계	6,626	8,435	8,542	9,216	9,944	10.7
		정책사업	6,031	7,895	8,082	8,666	9,320	11.5
		기본경비	595	540	460	550	624	1.2
	의원 1인당	계	141	179	182	196	212	10.7
		정책사업	128	168	172	184	198	11.5
		기본경비	13	11	10	12	13	1.2
대구 (32명)	총액	계	4,521	5,832	6,154	6,951	7,407	13.1
		정책사업	4,309	5,591	5,898	6,707	7,171	13.6
		기본경비	212	241	256	244	236	2.7
	의원 1인당	계	146	182	192	217	231	12.2
		정책사업	139	175	184	210	224	12.7
		기본경비	7	8	8	8	7	1.9
제주 (45명)	총액	계	8,253	9,486	9,281	9,106	9,750	4.3
		정책사업	7,983	9,210	8,992	8,816	9,466	4.4
		기본경비	270	276	289	290	284	1.3
	의원 1인당 (교육포함)	계	183	211	206	202	217	4.3
		정책사업	177	205	200	196	210	4.4
		기본경비	6	6	6	6	6	1.3

자료(출처): 각 시·도별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예산 운영 측면의 시사점

○ 광역의회 사무처 예산 구조를 비교한 결과, 인천시의회 사무처 예산은 인건비 중심의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높고, 정책사업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정책사업비 비중이 높고 입법·정책연구, 예산분석, 시민소통, 디지털 의사 등 의정활동의 질적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음

○ 또한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2025년 예산은 243억 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천 9백만원(1.88%) 증가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 대비 의회사무처 예산 비중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16%로 동일하게 유지됨

- 이는 예산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시 전체 재정 규모 내에서 의회사무처의 상대적 위상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118억 9천 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8%를 차지하여, 인건비 중심의 고정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 반면 정책사업비의 신규 정책 영역 확대나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증액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정책사업비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의정활동 수행 분야가 52억 6천 4백만원(2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홍보 내실화(15억 6천 8백만원, 6.4%), 의회청사 유지관리(16억 5천 1백만원, 6.7%)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의원 1인당 정책사업의 예산이 2억 1천 3백만원 수준임
- 이는 정책사업비가 입법·정책 분석 고도화보다는 의정활동의 기본적 수행과 운영 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2025년 예산에서 399억 5천 8백만원이 정책사업의 예산이며, 입법활동 지원, 예산정책 활동 지원, 의정홍보, 의정정보화, 시민참여 및 민원 지원 사업 등 의정활동의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 의원 1인당 정책사업 예산이 3억 5천 7백만원 수준임

❍ 또한 경기도의회의 경우, 2025년 예산 1,094억 5천 5백만원 중 정책사업비가 608억 2천 1백만원(55.6%)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상회함

- 특히 예산분석 지원, 디지털 의정, 입법활동 지원 등 기능별 정책사업이 과 단위 조직과 연계되어 확대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정책사업비 증가율(20.2%)이 행정운영경비 증가율(5.0%)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의정활동 고도화를 예산 구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음
- 의원 1인당 정책사업 예산이 3억 9천만원 수준임

❍ 한편 부산·대구·제주 역시 인력운영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 또는 정책사업 재편을 통해 디지털 의정지원, 업무환경 개선,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등 선택적·목적형 정책사업비를 보완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 반면 인천시의회의 경우, 조직 및 인력 구조가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중심의 행정운영경비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정책사업비를 통해 의정활동의 질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정책사업비 비중이 낮은 예산 구조는 입법·정책 분석 기능의 외부 용역 의존 확대, 의회 차원의 정책 축적 및 전문성 내재화 한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의회 기능 고도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종합하면, 인천시의회 사무처 예산 구조는 단기적 안정성과 조직 유지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의정활동의 전문화·다변화·고도화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정책사업비 활용의 폭이 제한적인 구조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예산 운영 방향은 인력운영비 중심의 구조를 전제로 하되, 정책사업비를 활용하여 입법·정책·재정 분석, 디지털 의정, 시민소통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예산 재구조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인천시의회 사무처 수요 조사

인천시의회 사무처 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법

○ 인천시의회의 조직 및 기능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인천시의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 조직 및 기능의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 기능 개편의 방향 설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인천시의회사무처의 조직 개편 방향 설정을 위해 인천시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26년 1월 기준, 인천시의회사무처 직원의 현원은 135명이며, 총 81부가 취합됨
- 조사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됨
- 조사방법은 인천시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인사담당)의 협조를 통해 서면으로 실시함

2) 조사 구성 및 내용

○ 인천시의회사무처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성함

- ① 인천광역시의회의 대내외 환경분석, ②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③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기능, ④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 첫째, 인천광역시의회의 대내외 환경분석

- 인천광역시의회의 전략을 설정하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분석을 실시함

• 대내적 환경으로는 인천시의회의 장점 및 약점을 도출함

• 대외적 환경으로는 인천시의회에 주어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도출함

○ 둘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 및 부서의 문제점에 대해 설문함
- 담당관 및 팀별로 조직 개편의 필요 인식, 필요 사유를 조사함
- 지방의회 사무의 주요 8대 기능에 대하여 향후(5년 후) 기능의 중요도, 업무난이도, 행정수요, 인력보충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함
-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조직 기구를 토대로 주요 기능을 구분하여 향후(5년 후) 기능 중요도, 업무난이도, 행정수요, 인력보충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함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현행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

○ 셋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기능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행정기능 조정에 대한 인식과 대안에 대해 설문함

• 조정 방안(신설, 폐지, 통폐합, 분리, 확대, 축소, 이관, 위탁), 주체, 이유 및 근거

○ 넷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표 5-1〕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분	설문 내용
1. 대내외 환경분석	- 대내적 환경(장점(강점), 단점(약점) - 대외적 환경(기회요인, 위협요인)
2. 조직 운영	- 조직 개편의 필요성, 부서의 문제점 - 지방의회 사무기구 8대 기능에 대한 향후(5년 후)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수요, 인력보충 필요성 -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에 대한 향후(5년 후)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수요, 인력보충 필요성 -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현행 배치, 운영 사항
3. 기능	-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한, 사무처 행정 기능 조정(신설, 폐지, 통폐합, 분리, 확대, 축소, 이관, 위탁) 방안, 조정 주체, 근거
4. 개선 사항	-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
5.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 직종 - 직급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3) 응답자 일반사항

○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 56.8%, 여성 43.2%로 남성이 다소 높음
- 직종은 행정직군 65.4%, 기술직군 13.6%, 전문직군 11.1%, 기타 9.9%임
- 직급은 9급-8급 2.5%, 6급 44.4%, 7급 27.2%, 5급 13.6%, 4급, 3.7%를 차지함

〔표 5-2〕 응답자 일반사항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구분		명	비율
성별	남성	46	56.8	직급	9급-8급	2	2.5
	여성	35	43.2		7급	22	27.2
	합계	81	100.0		6급	36	44.4
직종	행정직군	53	65.4		5급	11	13.6
	기술직군	11	13.6		4급 이상	3	3.7
	전문직군(임기제 등)	9	11.1		합계	74	91.4
	기타	8	9.9				
	합계	81	100.0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2. 직원 설문조사 결과

1) 인천시의회 환경분석

❖ 강점(장점)

○ 설문 응답자들이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시의회의 강점은 크게 4가지로 인적 자원 및 역량, 조직 문화 및 근무 환경, 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 대외 관계 및 정책적 역량으로 구분됨.

-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조직의 가장 큰 강점으로 구성원들의 우수한 역량을 꼽음
- 인적 자원 및 역량으로 조직 구성원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 인적 구성의 특성, 업무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직 문화 및 근무 환경으로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 소통과 협력, 근무 여건이 여유롭다는 평가가 있음
- 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으로 전문화된 부서 체계,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대외 관계 및 정책적 역량으로 집행부 견제, 집행부와의 협치, 정책적 시야 확장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3〕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강점

구분		내용
강점(장점)	인적 자원 및 역량	- 조직 구성원의 높은 전문성과 역량 - 인적 구성의 특성: 7급 이상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업무 역량 우수 - 업무 전문성 지속:의회 잔류 희망 직원이 많아지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
	조직 문화 및 근무 환경	-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 자유롭고 유연한 조직 문화 형성 - 소통과 협력: 구성원간 친화력, 문제 발생시 결속력 강화, 부서 간 협치와 소통 원활 등 - 근무 여건: 일과 삶의 균형 양호, 대민 업무에 대한 부담이 적음 등
	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	- 전문화된 부서 체계: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등 사무 분담 - 신속한 의사결정:집행부에 비해 보고 절차가 간소하여 의사결정 신속, 담당자→팀장→담당관→의장
	대외 관계 및 정책적 역량	- 집행부 견제: 행정사무 감사 등 의회 고유 기능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 보유 - 집행부와 협치: 집행부와 원활한 업무 교류 및 소통, 우호적인 행정 협력관계 유지 등 - 정책적 시야 확장: 인천시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정보를 활용 가능,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시야 확장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약점(단점)

○ 인천시의회의 약점은 크게 4가지로 인사 및 조직 구조의 한계, 업무의 전문성 및 정보 역량 부족, 조직 문화 및 내부 갈등, 자원 및 환경적 제약으로 구분됨.

- 가장 큰 약점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인사 정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인사 및 조직 구조의 한계로 인력 부족, 인사권 독립의 불완전성, 승진 적체,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단절을 꼽음
- 업무의 전문성 및 정보 역량 부족으로 전문 분야 인력 부족, 정보 비대칭, 의정지원 체계 미흡이 나타남
- 조직 문화 및 내부 갈등으로 구성원들 간 인식 차이, 경직된 조직 문화, 보고 및 의전 부담 등이 나타남
- 자원 및 환경적 제약으로 물적 자원의 한계, 주민 소통 취약이 제시됨

〔표 5-4〕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약점

구분	내용	
약점(단점)	인사 및 조직 구조의 한계	- 인력 부족: 절대적인 직원 수가 부족하며, 결원 발생시 신속한 충원이 어려움 - 인사권 독립의 불완전성: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독립적인 권한 행사에 제약 - 승진 적체: 조직 규모의 한계로 승진 정체 현상 심화, 특히, 기술직군(전산, 방송통신 등)의 상위직 승진 요인 부족 -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단절: 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인사가 고립되고,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에 한계
	업무의 전문성 및 정보 역량 부족	- 전문 인력 부족: 행정직 위주의 조직 구성으로 인해 기술직군이나 특정 전문 분야(도시계획, 재개발 등)의 인력 부족 - 정보 비대칭: 집행부의 방대한 정보력에 비해 의회의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전문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어려움 - 의정지원 체계 미흡: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 체계가 약하며, 시스템과 자료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짐
	조직문화 및 내부 갈등	- 구성원 간 인식 차이: 일반직 직원과 정책지원관 사이에 역할에 대한 인식 격차 존재, 정책지원관의 잦은 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 경직된 조직 문화: 연공서열 중심의 대우, 폐쇄적인 문화, 의원과 직원 간의 수직적인 관계 - 보고 및 의전 부담: 의원, 상임위원장, 의장 등 보고 및 의전 대상이 많아 업무 체계에 혼란
	자원 및 환경적 제약	- 물적 자원 한계: 사무 장소가 협소하고, 청사 면적 및 재정 여건 열악 - 주민 소통 취약: 주민과의 신뢰 구축 및 소통 측면에서 구조적인 취약성 존재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기회 요인

○ 인천시의회의 기회요인은 크게 4가지로 법적·제도적 권한 강화, 인사권 독립 및 전문 인력 도입, 인천시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시민 소통 및 기술 환경 변화로 구분됨.

-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따른 의회의 위상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 법적·제도적 권한 강화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지방분권 확대 등을 꼽음
- 인사권 독립 및 전문 인력 도입은 인사권 독립의 실질화, 정책지원관 활용이 있음
-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는 도시 규모 확장과 인구 증가, 의원 정수 및 조직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 증가로 나타남
- 시민 소통 및 기술환경 변화는 주민참여 활성화, 디지털 의정 환경으로 나타남

〔표 5-5〕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기회 요인

구분	내용	
기회 요인	법적, 제도적 권한 강화	- 지방의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 위상이 지속적으로 제고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지방의회법 제정시 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확보되어 조직확대와 기능 개편 기회 - 지방분권 확대: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가속화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정책적 영향력이 확대
	인사권 독립 및 전문 인력 도입	- 인사권 독립의 실질화: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 - 정책지원관 제도 활용: 정책지원관 도입을 통해 의원의 입법 및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마련
	지역여건 및 행정수요 변화	- 도시규모 확장 및 인구 증가: 인천시 인구의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성장에 따라 의회 기능 강화 필요성 증대 - 의원 정수 및 조직 확대: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증원 논의와 상임위원회 신설 예상은 사무처 조직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 대규모 개발 사업, 광역 현안 증가로 의회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사결정권을 강화할 기회 증가
	시민 소통 및 기술 환경 변화	-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조례발안제 등 직접 참여 제도가 강화되고 주민 주권 확대 흐름에 따라 의회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 - 디지털 의정 환경: 정보 공개 강화와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환경 조성은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위협 요인

○ 인천시의회의 위협요인은 제도적 한계 및 집행부 종속성, 인사관리의 폐쇄성과 정체,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 저하, 의정지원 체계 및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됨.

-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요인은 제도적 한계로 독립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음
- 제도적 한계와 집행부 종속성은 핵심 권한(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집행부의 견제,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나타남
- 인사관리의 폐쇄성 및 정체는 인사 및 승진 정체, 집행부와 인사 교류 단절, 조직의 경직성을 꼽음
-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는 지방의회에 대한 낮은 사회적 신뢰, 집행부의 부정적 시각, 이미지 훼손 등이 있음
- 의정지원 체계 및 환경적 요인은 체계적 지원 부족, 정보력 열세, 정치적 변동성이 있음

〔표 5-6〕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 위협 요인

구분	내용	
위협 요인	제도적 한계 및 집행부 종속성	- 핵심 권한 부재: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의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집행부에 종속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어려움 - 집행부 견제: 집행부가 조직권을 바탕으로 의회 인사권에 관여하거나 의회활동을 견제하는 상황 지속 - 강시장-약의회 구조: 전형적인 강시장-약의회 체제로 인해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위험 존재
	인사관리의 폐쇄성 및 정체	- 인사 및 승진 적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승진 적체가 심각,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짐 - 교류 단절: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단절되어 우수한 인재 확보 어려움 - 조직의 경직성: 직원 구성에 개방성이 부족하고, 변화가 적어 전문성 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 발생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 저하	- 낮은 사회적 신뢰: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낮은 신뢰도,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 존재 - 집행부의 부정적 시각: 지방부에서 의회를 단순히 시청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 업무가 편하다는 부정적 편견 발생 - 이미지 훼손: 개별 사건에 따른 이미지 훼손, 의원의 청렴도 의식 개선 노력 부족
	의정지원 체계 및 환경적 요인	- 체계적 지원 부족: 의원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 체계 미비 - 정보력 열세: 집행부에 비해 제한적인 인력 운영 구조로 정보력 확보 면에서 열세 - 내부 갈등: 일반 직원과 정책지원과 사이의 업무 마찰 등 조직 내 불협화음 가능성 - 정치적 변동성: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의정 수행 과정의 수시 변동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SWOT 분석 결과 종합

○ 앞선 응답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환경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대외적 기회를 보유하고 있으나, 조직·예산권의 부재와 집행부 견제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내부 환경적으로 구성원의 높은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본 업무 역량이 탄탄하며, 보고 절차가 단순하여 유연한 행정처리가 가능함. 다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스스로 조직의 규모를 확충하지 못하며, 이는 인사 적체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외부 환경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특히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의원 정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 확대에 근거가 될 수 있음. 다만, 여전히 집행부 중심의 구조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는 정책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표 5-7〕 인천시의회 사무처 환경분석(SWOT)분석 결과 종합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구성원의 높은 역량과 전문성 - 수평적·자유로운 조직 문화 -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간소한 보고체계) -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승진 적체 - 조직권·예산편성권의 부재로 인한 독립성 한계 - 집행부와 인사교류 단절에 따른 고립 - 기술직군 부족 등 특정 분야 전문성 편차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및 분권 확대 흐름 -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용이 - 인천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가능성 - 디지털 의정환경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 강시장-약의회 구조 및 집행부 견제 심화 - 지방의회에 대한 낮은 신뢰와 부정적 여론 - 정치적 변동성에 따른 정책 연속성 저하 - 지방행 부대 열악한 정보력 및 자원 격차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2) 지방의회 및 사무기구 기능의 미래 인식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8대 기능에 대해,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5년 후, 각 기능에 대한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수요 인력 보충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능 중요도 측면에서 입법지원, 정책지원, 조사분석, 의회운영, 조직운영, 기능유지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업무의 난이도 측면에서 입법지원, 정책지원, 조사분석, 기능유지 등에서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정수요 측면에서 입법지원, 정책지원, 의회 운영, 조직운영 등에서 행정수요가 많아 질 것으로 나타남
- 인력보충의 필요성 측면에서 조직운영, 의회운영, 입법지원, 정책지원, 기능유지, 조사분석 등에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인식 조사 결과, 조직운영, 의회운영, 기능유지, 여론수렴 등 사무처리 기능보다, 입법지원, 정책지원, 조사분석, 역량강화 등 의정활동 지원 기능이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수요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인력보충의 필요는 조직운영, 의회운영, 기능유지, 여론수렴 등 사무처리 기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8〕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8대 기능에 대한 미래 인식

구분		기능 중요도 (향후 5년)	업무 난이도 (향후 5년)	행정수요 (향후 5년)	인력보충 필요 (향후 5년)
대기능	중기능				
사무처리 기능	조직운영	7.0	6.6	7.0	7.7
	의회운영	7.3	6.7	7.0	7.5
	기능유지	7.0	6.9	6.9	7.1
	여론수렴	6.6	6.2	6.4	6.6
의정활동 지원 기능	입법지원	7.6	7.4	7.4	7.2
	정책지원	7.5	7.3	7.2	7.2
	조사분석	7.2	7.0	6.9	7.0
	역량강화	6.9	6.5	6.4	6.6

주: 10점 척도 기준 7.0 이상 음영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 또한, 현재 인천시의회 사무처의 각 부서별 기능을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5년후, 각 조직 기능에 대한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수요, 인력보충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능 중요도는 전문위원실, 인사, 총무, 법제지원, 입법정책, 관리 등의 기능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남
- 업무 난이도는 전문위원실, 인사, 법제지원, 총무, 입법정책 등의 조직 기능이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남
- 행정수요는 전문위원실, 인사, 법제지원, 총무, 관리, 입법정책 등의 조직 기능이 수요가 많아 질 것으로 나타남
- 인력보충의 필요는 전문위원실, 인사, 총무, 관리, 법제지원, 입법정책, 소통홍보정책 등의 조직 기능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5-9〕 인천시의회 사무처 조직기구별 기능에 대한 미래 인식

구분		기능 중요도 (향후 5년)	업무 난이도 (향후 5년)	행정수요 (향후 5년)	인력보충 필요 (향후 5년)
담당관	담당				
의정정책과	총무	7.2	6.8	7.0	6.9
	인사	7.4	7.2	7.1	7.3
	관리	6.9	6.6	6.8	6.8
	비서	6.2	6.1	6.1	5.6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정책	6.6	6.3	6.7	6.1
	언론홍보	6.8	6.4	6.7	6.1
	방송영상	6.6	6.2	6.5	5.9
의사담당관	의사	6.8	6.5	6.4	6.1
	의안	6.7	6.2	6.4	6.1
	의정정보화	6.5	6.2	6.2	5.9
	기록	5.9	5.4	5.6	5.2
입법담당관	입법정책	6.9	6.7	6.8	6.3
	입법조사	6.2	6.4	6.3	6.0
	법제지원1	7.1	6.9	7.1	6.6
	법제지원2	7.0	6.8	6.9	6.7
수석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7.9	7.8	7.9	7.6

주: 10점 척도 기준, 6.5 이상 음영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3)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운영에 대한 인식

○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현행 배치에 대한 응답 결과, 보통 52.6%, 적절, 28.9%, 부적절 19% 순으로 나타남

〔표 5-10〕 현행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인식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18.4%	52.6%	28.9%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 또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 및 인력운영 방식, 업무 범위 및 전문성, 근무환경 및 인사체계 측면에서 3가지로 정리됨

-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식에 있어 상당수는 현행 배치(위원회형)가 적절(81.6%, 보통+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일부의 경우 별도의 관리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 업무 범위 및 전문성 측면에서 업무경계의 모호성, 객관성 유지 어려움, 전문성 및 역량 편차 등이 한계가 있다고 봄
- 근무환경 및 인사체계 측면에서 인사관리 및 순환 근무, 직급 및 채용 체계, 공간 구성 등의 대안도 제시됨

〔표 5-11〕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구분	내용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식	- 별도의 관리 부서 신설 필요 - 현행 상임위원회형에서 사무기구형으로 배치하여 행정지원과 정책지원 업무의 경계를 명확
업무 범위 및 전문성	- 업무 경계의 모호성: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의원의 개인적인 정무활동(행사 참석, 민원처리)에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법·예산 분석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 - 객관성 유지 어려움: 의원의 정치적 견해나 요구에 따른 논리 보강에 치중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 분석이 어려움 - 전문성 및 역량 편차: 정책지원관의 관련 경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하며, 상임위원별 정책 수요와 배치간 의 불일치 발생
근무환경 및 인사체계	- 인사관리: 장기 고정 배치로 인한 조직 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년 주기(의원 상임위 배정 시점 연계)의 순환근무 필요 - 직급 및 채용 체계: 일괄적인 6급 적용보다는 업무 경험과 역량에 따라 7급 상당 임기제로 채용 후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효과적 - 물리적 공간 구성: 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물리적으로 인접한 공간 배치가 필요, 행정지원 인력과 명확한 구분을 위해 사무실 분리 의견이 공존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4) 사무처 조직의 기능 조정에 대한 인식 조사

○ 향후, 행정수요 등을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 행정 기능 조정에 대한 인식을 신설, 폐지, 통폐합, 분리, 확대, 축소, 이관, 위탁 등 조정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일부 기능 조정 의견은 응답자가 복수의 조정 의견을 체크한 경우 중복 될 수 있음

신설

○ 국제교류, 감사, 예산분석 등의 업무에 있어 새로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봄

- 국제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팀 또는 국제교류팀 신설
- 감사: 의회 독립성 강화, 자체 내부 감사 기능 및 청렴윤리 기능 부재에 따른 신설
- 예산 분석: 예결산 자료 조사 및 비용 추계를 위한 예산담당관 신설
- 의정지원: 의원 의정활동을 전담 지원(정책지원관)하는 의정지원팀 신설
- 기타: 신규 상임위원회, 청사 이전 및 공사 진행을 위한 별도 TF팀 구성 등

〔표 5-12〕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신설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의정정책관	총무	국제교류	팀 신설	- 전문적, 효율적으로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함
의정정책관	총무	국제교류	팀 신설	-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높아 전문성을 갖춘 팀 신설 필요
의정정책관	총무	국제교류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업무	새로운 팀단위 신설	- 국제교류 및 국외 출장 관련 전문성 강화 필요
의정정책관	총무	국제교류업무	팀 신설	-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전문성 강화
의정정책관	총무	국제교류업무	팀 신설	- 현재는 1~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 기대 곤란.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전문임기제 등 우수 인력 고용 필요
의정정책관	총무	국회 출장 관련 업무	새로운 팀 신설	- 국외출장관련 업무 전문성 필요(각 상임위 주관X)
의정정책관	총무	공무 국외 출장 등 대외업무	새로운 팀 단위로 독립	- 대외협력 업무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담팀 필요성 증가
의정정책관	총무	공무 국외 출장 등 대외업무	새로운 팀 조성	- 의원 해외시찰은 위험성이 높아 전문성을 가진 전담팀 신설 필요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의정정책관	인사	인사, 성과평가, 교육	교육 분야 신설	- 의회 자체 교육 개발 및 교육 담당 부재로 총무팀에서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고 있음.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교육계획 자체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담당 필요
의정정책관	청사건립	의회 청사 이전 및 공사	새로운 팀 단위로 독립	- 원활한 의회청사 이전 및 공사 진행을 위하여 별도TF팀 구성
입법담당관	입법조사	예결산 자료 조사	예산담당관 신설	- 예산 결산 자료조사. 비용추계 등
		감사 총괄 청렴윤리 행정감사	새로운 과 단위 (감사관)	- 의회자체 내부감사기능 및 청렴윤리 기능 부재
		감사업무	새로운 과 단위로 독립 (감사관)	- 의회도 감사의 기능을 갖춰야 함
		감사 관련 업무	팀 신설	- 의회 독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관련 이슈 증가(권익위, 공직윤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위원회 운영	의장	- 의원수 고려, 신규위원회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의원의 정책지원 업무	상임위 정책지원 인력 분리	- 현행 상임위 정책지원인력을 별도의 의정지원과를 신설해 분리하고 분야별 팀을 구성해 운영해야함. 의사지원팀, 의정지원팀 이렇게 분리를 하던지 해야함. 현재 주무관들과 지원관들 간의 업무 경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업무	상임위원회 내 팀 1개 신설	- 상임위원회 내 팀 신설 필요(정책지원관 관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새로운 과단위로 설치	- 6.3 지방선거시 시의원(현40명) 증원시에 상임위원회(현6개) 추가설치가 예상되고 직급별 정원 11명 증원필요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통폐합

○ 업무의 연계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봄

- 정보화 및 홍보: 의정정보화팀과 소통홍보정책팀을 통합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도모
- 방송 및 기록: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방송영상 업무와 기록 업무 통합
- 입법 및 조사: 입법정책팀과 입법조사팀을 통합
- 법제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법제지원 1팀과 2팀 통합

- 예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업무 수요가 한시적인 예결산전문위원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통합

〔표 5-13〕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통폐합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	홈페이지 및 웹정보시스템	소통홍보팀과 의정정보화팀 통합	- 시스템 운영은 기술 기반·콘텐츠 운영·대외 서비스라는 공통 영역이 큼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	업무 일체	소통홍보팀과 의정정보화팀 통합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	의정 정보화		- 통합, 전산 관리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	소통홍보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	의정정보화사업	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정책팀 통합	- 업무 연계성, 업무량 고려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	홍보소통 업무	통합. 축소	- 업무 비효율
소통홍보 담당관	방송영상	방송영상		- 방송영상+기록 통합
의사담당관	기록	기록		
입법담당관	입법조사	자치법규. 예결산 자료 조사	입법정책과 통합	
입법담당관	입법조사	전체	입법정책팀으로 통폐합	- 굳이 팀이 하나 있을 필요가 없고, 업무량도 팀하나가 하기에는 적음
입법담당관	입법조사	업무 전체	입법정책이랑 통합	- 입법조사팀 업무가 모호하며, 입법정책과 통폐합해서 보다 전문적인 입법, 정책조사 연구기관 필요
입법담당관	법제1 · 2	조례 검토	법제지원 1 · 2팀 통합	- 업무효율성 및 직원배치의 적정성을 위해 통합 필요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	전체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통합	- 업무량 고려 - 1년에 정례회 2회정도 운영하는데, 상임위 형태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산	예산결산		- 연간 본예산 1회 및 추경 2회 등 특정 회기에 한정된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유로 상시적인 고정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합리적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예산결산			- 예산결산이란 한시적인 수요로 진행되며, 한 개의 팀으로 운영 가능
의회운영				- 4급 간부 1명 증원을 위해 만든 자리이므로 기능통합하여 하위직 증원 필요
입법담당관	입법정책	의원교육 업무	팀간 업무 재배치	- 의원교육과 직원교육 업무 통합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분리

○ 현재는 하나의 부서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행정 기능을 줄이기 위해 분리 필요

- 총무 내 기능 분리: 의전, 급여, 예산
- 인사 내 기능 분리: 조직, 인사, 평가, 교육
- 관리 내 기능 분리: 청사관리, 계약, 지출

〔표 5-14〕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분리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의정정책관	인사	징계관리/인사관리/조직운영/교육훈련/성과평가	새로운 과 단위 업무로 독립	- 1팀(정원3명)의 업무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일과 업무 범위가 넓음. - 과단위로 개편필요(2-3팀)
의정정책관	인사	조직	새로운 팀 단위로 독립	- 인사 기능과 조직 기능을 분리하여, 변화 대응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능 조정 필요
의정정책관	인사	인사 업무	새로운 과 단위로 독립	- 시 집행부 인사과에서 하는 일을 한 개의 팀에서 수행 중임.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 조직 확대 및 인력 관리 문제 대두 우려 -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조직 및 기능 등 전문화 필요
의정정책관	인사	인사 업무	인재 채용, 평가, 인사관리	- 인사 기능 독립에 따라 인사팀 인원 확충 필요
의정정책관	인사, 총무	채용, 급여	교육 신설 급여 분리	- 급여와 인력 채용은 연속적 행위로 총무팀과 인사팀에 급여와 채용이 나뉘어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의정정책관	총무	총무 담당	팀 개편	- 서무, 공무직 인사, 급여, 비서실 관련 업무분장 혼재로 팀 개편 필요
의정정책관	총무	총무 업무	총무팀 역할 축소	- 기존 총무팀 역할 및 근무범위 조정 필요(일반 총무·서무)
의정정책관	총무	의전 업무	총무팀 분리	-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팀 분리 신설(협의회, 의전, 공무출장, 의원 지원·관리)
의정정책관	총무	총무 의전	의정정책관	- 업무수요 과다
의정정책관	총무	의견 수행	새로운 단위 분할 필요	- 총무팀의 의전 행사기능 강화에 따라 별도 의전기능 수행 담당 필요
의정정책관	총무	청렴. 행동강령 등	새로운 팀으로 분리	- 의회청렴도 개선, 의회독립성 강화에 따른 자정작용 필요 등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의정정책관	총무	대외국제협력/국제교류/의원의정활동지원/직원복지 급여 등	분리	- 국제교류, 국제협력업무, 의정지원업무를 1개팀, 직원복무, 복지, 급여 등 업무를 1개팀
의정정책관	관리	청사관리/계약,지출/차량관리	분리	-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 본연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주로하는 관리팀. 계약, 지출 등 회계업무를 별도팀으로 구성운영할 필요
의정정책관	관리	회계관리업무	새로운 팀 단위로 독립	- 팀별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위해 분리 (관리팀→관리팀, 회계팀)
의정정책관	관리	팀 개편	시설, 지출 관련 업무 개편 필요	
		의회청사 이전 및 공사	새로운 팀 단위로 독립 (청사건립팀)	- 원활한 의회청사 이전 및 공사 진행을 위하여 별도TF팀 구성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확대

○ 수요 증가 및 중요도에 따른 기능과 인력 보강이 필요한 부문은 다음과 같음

- 입법조사, 법제지원, 전문위원실 내 재정분석 및 예산 검토 등의 전문인력 확충 필요

〔표 5-15〕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확대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입법담당관	입법조사	입법 동향 분석 등	전문인력 보강	- 지역실정에 맞는 입법 동향 및 정책사항 발굴로 의원의 입법 의정활동에 실효성있는 지원 필요
입법담당관	법제지원	법제지원	인력 강화	- 전문성강화 - 인력보강으로입법체계적지원
입법담당관	법제지원	검토보고서 작성		- 업무량 과다
입법담당관	법제지원	소관 조례 검토	상임위 소관 의원발의 검토	- 조례 검토의 중요성으로 인한 전문인력 추가 확보
입법담당관	법제지원	입법 자료 검토 조사관	전문 입법검토 능력을 담당한 직원 필요함	- 조례 제정, 개정 과정이 세밀한 검토한 필요한 경우가 있음
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분석 보고	전문인력 보강	- 전문적인 재정분석 자료의 수시 제공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 강화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재정분석 및 예산검토의 전문성을 위한 역할 및 인력 필요
수석전문위원	상임위원회	기술직전문인력	산경위·건교위 기술직 증원 또는 행정직 → 기술직 조정	- 도시계획·재개발 등 전문성 요구 증가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이관

○ 업무 성격이 달라,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로 이관이 필요한 업무는 수행업무와 시설관리 업무임

〔표 5-16〕 인천시의회사무처 기능 조정 의견: 이관

현행 부서명		업무명	조정 방안(주체)	이유/근거
담당관	담당			
의정정책관	총무팀	수행업무	총무->비서	
의정정책관	관리팀	시설관리	관리->시설공단	
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정책	홈페이지관리	처장	전산분야(인력포함) 의사담당관(의정정보화팀)이관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3. 수요 종합

○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편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으로 독립성 확보,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 개선, 인사 협약 개정 등이 요구됨

- 독립성 확보: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완전한 독립을 위한 법적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함
- 조직 신설 및 조정: 행정수요의 증가와 중요도, 각 부서별 업무의 연계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에 따라 조직의 신설 및 조정이 필요함
- 복수 직렬 및 승진구조 개선: 행정직 위주의 조직에서 탈피하여 소수 직렬의 승진 안배와 승진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관 이상의 복수 직렬 확대가 필요함
- 인사 협약 개정: 시 본청과의 인사 협약으로 양질의 인원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로, 조직의 선순환을 위해 전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며, 의회의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인사 협약 개정 필요

○ 둘째,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산·결산 전담 인력 확보,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이 요구됨

-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무적 업무와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개별 보좌보다는 전문 분야별로 깊이 있은 입법 및 예산 심의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입법, 예산, 결산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장기 보직 운영을 통한 전문성 구축, 잦은 순환을 최소화하여 업무 숙련도와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셋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등이 요구됨

- 업무 표준화: 상임위원회별로 상이한 검토보고서, 자료요구 방식 등을 공통 템플릿으로 표준화하고, 과거 자료를 DB화하는 의정지원시스템의 고도화
- 전산 및 지원 인프라: 의회 내 전산 유지보수팀을 상시 가동하고, 상임위 방송 등 기술적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공간 및 배치: 증가하는 인력에 따른 물리적 공간 확충이 필요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위해 공무원과 의원, 임기제 인력의 공간 배치의 검토가 필요

○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확대 필요

○ 그다음,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신설 기능으로는 국제교류, 공무 국외 등 대외 업무, 교육, 감사 및 청렴 윤리 기능 등과 정책지원관의 배치 변경 등
- 통폐합 기능으로 소통홍보팀과 의정정보화팀, 방송영상팀과 기록팀, 입법정책팀과 입법조사팀, 전문위원실 내 운영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통
- 분리 기능으로 총무팀 내 의전, 급여, 예산, 서무, 인사팀 내 인사, 조직, 평가, 교육, 관리팀 내 청사관리, 계약, 지출 등의 업무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확대 기능으로 법제지원, 입법조사, 전문위원실 내 재정분석 및 예결산 검토, 도시계획, 재개발 등 분야별 전문 인력 확대 필요
- 이관 기능으로 관리팀의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공단, 총무팀의 수행 업무는 비서실 등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봄

6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제6장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1.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의 기본 방향

조직 구조의 국(局)·과(課) 체제 전환과 기능 분화

○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 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

- 인천시의회는 현재 사무처장 아래 '담당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회는 '국-과' 체제로 전화하여 기능적 분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사무처장 직속의 과도한 통솔 범위를 분산하기 위해 의정국(3급 직제)을 신설하여 사무처 전반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음
  - 인천시의회 역시 의정정책관(3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수의 기능을 포괄하는 담당관 구조를 띠고 있음

○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 전반의 업무 조정 기능을 담당할 '국' 단위 신설과 혼재된 담당관 기능을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부서 편제

- 입법, 예산분석, 감사, 홍보 등 핵심 기능을 독립된 과 단위로 분화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회는 디지털의사과, 공간정보화과, 예산분석과, 법제과 등을 독립 편제하여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구조적으로 강화함
  - 인천시의회는 의정정책관, 입법담당관 내 여러 팀이 혼재된 형태로 향후 전문적인 의정지원, 정책지원을 위해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임

- 지방의회 사무 기구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따라 단순히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지원, 예산 분석, 정책 설계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 규모의 확충이 필수적임

○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따라 사무처의 행정적 부담과 기능적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실질화되었으며, 독자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는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사무처 내부 운영을 위한 자체 행정 인력이 확보
-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의 업무를 관리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중간 관리 조직과 지원 인력이 필요함
-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따라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예산편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자체 감사기구 등 신규 권한이 부여될 예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확보

○ 또한, 현행 '담당관' 중심의 포괄적인 구조로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법지원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예산·재정 분석, 자체감사, 디지털의정 등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증원이 전제가 되어야 함

○ 현재, 인천시의회의 의원 1인당 정원 인력은 3.5명으로 유사 규모의 타시도 의회와 비교할 때 적은 수준이며, 300만 대도시 인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약 15조에 달하는 인천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음

- 제주(4.6명), 대구(4.2명), 서울(3.8명)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평균 인력 증감률도 4.4% 수준이나 경기도(6.2%), 부산(7.0%), 대구(9.7%)에 비해 낮음

○ 그 외, 승진의 적체 해소와 소수 직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정원 확보는 필요함

예산 운영의 재구조화

○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 확대

○ 인천시의회는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 광역 행정 수요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비 규모는 낮아 실질적인 정책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2025년 기준 인천시의회의 정책사업비는 85억 2천만원으로 경기도의회(608억원), 서울시의회(399억원)은 물론, 규모가 비슷한 부산(93억원), 제주(94억원)보다 적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연평균 예산 증감률 역시, 인천시의회는 6.1%로 대구시의회(13.6%), 부산시의회(11.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의원 개개인의 입법 및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예산 수준에 있어서도, 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정책사업비는 2.1억 원 수준으로, 경기도(3.9억 원)나 서울(3.5억 원)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며, 대구(2.2억 원)보다도 낮은 수치임

○ 또한, 강화된 지방의회 권한에 따라 입법 및 예산 심사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졌으나,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 운용 예산이 부족함

- 정책사업비가 기존 영역(의정활동 수행, 홍보 등)에 안정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나, 새로운 의정 수요(디지털 전환, 전문 연구 등)를 위한 예산 항목은 부족한 실정임

2.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 조직 및 기능 개편 수요

○ 앞선 내부 직원들의 기능 개편 수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설, 통폐합, 분리, 확대 기능 등 다양한 수요가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기능 조정(안)을 도출함

○ 이를 토대로 기능 조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주요 기능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음

- 국제교류/대외협력팀 신설: 총무팀 내에서 수행하던 국제협력 업무를 분리하여 신설
- 인사팀(신설/분리): 인사팀, 인력개발팀(교육), 청렴윤리팀(공직윤리)
- 재정분석팀(예산분석팀) 신설: 입법담당관 내에 혼재된 예·결산 자료 조사와 비용 추계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적인 재정분석 기능
- 청렴윤리팀 신설: 의회 독립성 강화에 따라 내부 감사 및 청렴 윤리 업무를 전담할 독립 부서를 신설
- 전문위원실(신설/분리):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정책지원관)
- 디지털 의사/정보화 기능 통합: 소통홍보팀과 의정정보화팀의 시스템 운영 기능을 통합, 디지털 의정 지원 기능 수행
- 입법담당 통합: 입법정책과 입법조사, 법제지원 1과 법제지원 2를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표 6-1〕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의 의견 종합

구분	조직(팀/과)	업무	필요성
신설	국제교류팀	- 국제교류, 대외협력, 공무 국외 출장 등 관련 업무 수행	- 국제교류, 대외협력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국제교류 업무 추진 필요
	인력개발팀 (교육팀)	- 의회 직원 및 의원의 자체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의회 자체 개발, 교육 담당 부재 - 직원 교육, 의원 교육 산재
	감사팀(감사 및 청렴윤리)	- 감사 총괄, 의회 자체 내부 감사 기능, 청렴 윤리 기능	- 의회 자체 내부 감사 기능 부재 - (지방의회법 제정안)
	정책지원팀(과)	- ①전문위원실 내 팀 신설 - ②사무처 내 의정지원과 신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전문위원실에 행정직과 같이 배치
	재정(예산)분석과	- 예산, 결산 자료 조사, 비용 추계 등	-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 입법, 예산 분석 등 지원 전문인력 부재
	전문위원실	- 신규 상임위원회 운영	- 분야별로 중첩, 의원수, 신규 상임위원회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
통폐합	소통홍보담당관(소통홍보팀) + (의사담당관)의정정보화팀		- 업무 연계성, 비효율 등
	소통홍보담당관(방송영상팀) + 의사담당관(기록팀)		- 업무 연계성, 비효율 등
	입법담당관(입법정책팀 + 입법조사팀)		- 입법조사팀 업무가 모호하며, 입법정책과 통폐합하여 보다 전문적인 입법, 정책조사 필요
	입법담당관(법제1팀 + 법제2팀)		- 업무효율성 및 직원배치의 적정성을 위해 통합 필요
	전문위원실(운영위원회 + 예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이란 한시적인 수요로 진행되며, 한 개의 팀으로 운영
분리	총무팀	의전, 급여, 예산, 서무	- 하나의 팀에 업무 범위가 다양 - 기능별 분리를 통해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
	인사팀	인사, 조직, 평가, 교육	
	관리팀	청사관리, 계약, 지출	
확대	법제지원	재정분석, 예결산 검토 분야별(도시계획, 재개발 등) 기술직 전문가	- 조례제정, 입법 동향 및 정책 발굴, 재정분석 및 예결산 분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할 및 인력 확충 필요
	입법조사		
	전문위원실		
이관	관리	시설관리 업무 → 시설공단	- 업무 성격 상이
	총무	수행 업무 (총무 → 비서)	- 업무 성격 상이
	홈페이지 관리	소통홍보정책 → 의사정보화팀	- 업무 성격 상이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단기) 담당관 단위의 기능 및 조직 신설 및 재편

○ 먼저, 현행 '담당관' 체제에서 기능 조정 수요를 반영한 기능 조정(안)은 다음과 같음

- 의정정책관: 총무담당(관리 통합), 인사담당, 국제협력담당(신설), 인력개발담당(신설), 청렴윤리담당(신설)
- 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 언론홍보담당
- 의사담당관: 의사담당, 의안담당, 의정정보화(기록, 소통정보화, 방송영상 통합)
- 입법담당관: 입법정책담당(입법조사 통합), 법제지원담당(법제1, 2 통합), 재정분석담당(신설)
- 전문위원: 의정지원담당(신설), 정책지원담당(신설)
  - 정책지원담당에 정책지원관 배치

〔표 6-2〕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안)

현행			현행 '담당관' 단위 내 기능 조정(안)	
담당관	담당/팀 구성		담당관	담당/팀 구성
의정 정책관	총무담당, 인사담당, 관리담당		의정 정책관	총무담당, 국제협력담당 인사담당, 인력개발(교육)담당 청렴윤리담당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정책담당, 언론홍보담당, 방송영상담당	⇒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 담당 언론홍보 담당
의사 담당관	의사담당, 의안담당, 의정정보화 담당, 기록담당		의사 담당관	의사 담당, 의안 담당 의정정보화 담당(기록, 소통정보화, 방송영상 포함)
입법 담당관	입법정책담당, 입법조사담당, 법제지원1담당, 법제지원2담당		입법 담당관	입법정책(조사) 담당 법제지원 담당 재정분석 담당
전문위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전문위원	상임위원회별 의정지원, 정책지원(정책지원관)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중장기) 기능별 과(課) 단위 조직 신설 및 재편

○ 그다음, '과(課)' 단위 체제로 전환할 경우, 기능 조정 수요를 반영한 기능 조정(안)은 다음과 같음

- 현행 '담당관' 체제에서 '과' 체제로 전환할 경우 총무관리과, 인사과, 소통홍보과, 의사운영과, 입법지원과, 전문위원실로 기능별 세분화 가능
- 총무관리과: 총무팀, 예산팀(계약 포함), 의전팀, 국제협력팀, 청사관리팀
- 인사과: 인사팀, 인사평가팀, 인력개발(교육)팀, 청렴윤리팀(감사 포함)
- 소통홍보과: 소통홍보기획팀, 언론대응팀
- 의사운영과: 의사팀, 의안팀, 의정정보화팀(기록팀, 방송영상, 소통정보화 포함)
- 입법지원과: 입법정책(조사)팀, 법제심사팀, 재정분석팀
- 전문위원실: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정책지원관)

〔표 6-3〕 인천시의회 사무처 기능 조정(안)

현행			'과(課)' 단위 내 기능 조정(안)	
담당관	담당/팀 구성	⇒	조직(과)	업무/팀 구성
의정 정책관	총무담당, 인사담당, 관리담당		총무관리과	총무팀, 예산팀(계약 포함), 의전팀, 국제협력팀, 청사관리팀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정책담당, 언론홍보담당, 방송영상담당		인사과	인사팀, 인사평가팀, 인력개발(교육)팀, 청렴윤리팀(감사 포함)
의사 담당관	의사담당, 의안담당, 의정정보화담당, 기록담당		소통홍보과	소통홍보기획팀, 언론대응팀
입법 담당관	입법정책담당, 입법조사담당, 법제지원1담당, 법제지원2담당		의사운영과	의사팀, 의안팀, 의정정보화팀(기록팀, 방송영상, 소통정보화 포함)
전문위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입법지원과	입법정책(조사)팀, 법제심사팀, 재정분석팀
			전문위원실	의정지원팀, 정책지원팀(정책지원관)

자료(출처): 연구자 작성

전문위원실 2 트렉 팀제 운영

○ 전문위원실 내 의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을 두어 상임위원회별 의정지원과 의원들의 정책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별 업무를 지원하는 의정지원과 의원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이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전문위원실 내 상임위원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혼재되어 있음
- 전문위원실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단순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정책지원팀을 구성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의회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별도의 부서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의회(의정지원과), 부산시의회(정책지원담당관)는 별도 조직을 두어 운영, 서울시의회(의사지원팀), 대구시의회(정책지원팀)는 전문위원실 내 별도 팀을 두어 운영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 인력 운용의 다각화

○ 자치입법의 질적 고도화와 법적 안정성 제고, 방대한 재정 규모에 대한 과학적 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입법 지원, 예산·결산 등 재정 분석 기능 확대를 통해 의정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치법규의 입법이 단순히 법률을 준용하는 수준을 넘어,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조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사와 법제 검토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필수적임
- 또한, 방대한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 비용 추계, 예산 및 결산 자료 분석, 중장기 재정 계획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재정 전문 인력이 필요함

○ 타 시도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 별도의 입법·재정분석 부서를 두고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추계분석관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인천시의회 사무처는 입법담당관 내 입법정책, 입법조사, 법제지원 담당에서 의원발의 조례 입법, 자치법규 입법, 의정 주요 현안의 조사·연구, 주요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등 의정활동 지원, 의회 쟁송 업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등 다양한 업무를 소수의 행정직 인력이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는 법제과와 재정분석과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추계분석관, 경기도의회는 법제과와 예산분석과,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등 조사 및 분석 전문 인력을 두고 있음
-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재정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에 정책연구위원 등 연구분석 전문인력을 두고 있음

○ 따라서, 별도의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입법조사, 법제지원, 예결산 분석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임위원회 수 대비 부족한 전문위원실 인력 확충과 도시계획·재개발 등 전문분야의 전문 인력 보강 필요

디지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

○ 의정지원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 지원하는 의정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별로 상이한 검토 보고서 형식을 표준화하고, 의정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의안,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정책지표 등 주요 의정자료를 하나의 통합 DB로 관리, 메타데이터를 부여하여 주제·부서·의원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
  - 그 외, 시민 공개·참여형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정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안건 진행현황, 표결 결과, 예산심사 내역 등을 시각화, 질의응답 데이터, 의원 발언 기록 등을 공개해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통 강화

○ 인천시의회는 현재 회의록, 의안, 예산자료 등 핵심 데이터가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의원이나 시민이 이를 쉽게 검색·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 회의록은 텍스트 위주로 공개되지만, 쟁점별 요약이나 관련 자료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제 정책분석이나 의정활동에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님

- 또한 의안·예산심사 자료 역시 PDF 형식의 단순 게시에 머물러 있어, 데이터베이스화와 비교·분석 기능이 미흡함

○ 한편,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각각 의정정보화팀, 디지털 의사과, 공간정보화과 등을 신설하여 회의 전산화, 전자회의시스템, 의정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의 근본적인 한계

○ 현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조직 구성과 예산 운영 전반에서 집행부의 지침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조직의 확대나 인력 증원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지역별 의정 수요에 맞는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의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개선되어야 함

○ 결국, 지방의회 조직은 단순히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을 스스로 구성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지방의회 조직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확대

○ 지방의회가 의정 수요에 대응하여 스스로 국과 과 단위의 조직을 설계할 수 있는 조직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은 독립되었으나, 정원 관리와 조직 구조 설계의 권한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지자체(집행부) 조례에 묶여 있음

- 기구 정원 규정의 개정: 지방의회가 의정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지방의회와 관련된 제약이 완화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의원 수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사무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조직 자율권 보장이 필요함
- 집행부의 일반 행정 직제 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입법 지원, 예산분석, 정책 연구 등 의회 특유의 기능에 최적화된 직제를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를 위한 예산은 집행부의 편성과정을 거쳐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짐

- 의회 예산 독립 편성권: 국회가 정부의 간섭 없이 국회 예산을 편성하듯이 지방의회도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여 본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는 독립된 예산편성이 필요
  - 집행부가 예산권을 토대로 의회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부작용 차단
- 또한, 의회 예산 구조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의 예산구조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 정책 개발, 시민 소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사업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법적 위상 확립

○ 현재와 같은 지방의회 조직 구성과 예산 체계로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기에 한계가 있음

○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인력, 운영 전반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 지방의회 사무조직, 조직 및 기능 개편, 의정지원 역량 강화

참고문헌

단행본/연구보고서

권자경·양창훈·이대웅. (2025).「강릉시의회 자율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발굴 연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금창호·권오철. (2020).「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위 외. (2021).「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 방안: 사무기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경희·이태근. (202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연구: 경남 창원시민과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한국공공관리학보」, 35(3).

김수연. (2023).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지방자치법연구」, 23(2).

김용석·김태영.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효과 분석: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간 만족도 비교분석.「한국지방행정학보」, 20(3).

김윤승. (20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제도변화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국가정책연구」, 38(2).

김정인. (202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의 현황과 과제.「한국행정논집」, 34(3).

김종세. (2019). 지방자치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법학연구」, 19(1).

김필두. (2024).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시민정치연구」, 8.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202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 방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연구용역 보고서.

류춘호. (2022).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임기제 공무원 인사 관리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문상덕. (2024). 지방의회의 정책의회로서의 역할강화 법제 고찰.「법학논총」, 41(1).

문원식. (202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 연구.「한국정책연구」, 22(4).

박노수.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실천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박순종. (202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과제.「월간 공공정책」, 19(8).

박형규 외. (2019).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제도 개선 방안.「GRI연구논총」, 21(2).

성중탁. (202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공법학연구」, 24(1).

손경희.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자치연구」, 25(3).

송현호 외.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역할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델파이 조사와 계층화 분석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7(3).

신명주. (2024).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4).

안성수·정세영. (2021).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정책개발연구」, 21(1).

주희진·고경훈·정기용. (2023).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고경훈·김건위. (2024).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조직재설계 방안 연구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준규. (2020).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관한 입법적 연구. 「입법학연구」, 17(2).

황동연·배귀희. (2019).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 방안. 「국가정책연구」, 33(2).

홍상우·김동욱·이대웅. (20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4).

행정안전부. (202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

행정안전부. (2024).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개정판).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교육 혁신. 2015.3.4.

행정안전부. (2025).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운영개요·법령해설

행정자료

경기도의회사무처. (2021). 경기도의회사무처 2021년 업무보고.

경기도의회사무처. (2022). 경기도의회사무처 2022년 업무보고.

경기도의회사무처. (2023). 경기도의회사무처 2023년 업무보고.

경기도의회사무처. (2024). 경기도의회사무처 2024년 업무보고.

경기도의회사무처. (2025). 경기도의회사무처 2025년 업무보고.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1).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2).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3).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4).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25).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1년 업무보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2).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2년 업무보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3).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3년 업무보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4).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4년 업무보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5a).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5년 업무보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5b). 2025년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2021). 302회 임시회 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2022). 314회 임시회 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2023). 320회 임시회 시의회 사무처 업무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2024.) 33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서울시의회사무처. (2025). 33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인천시의회사무처. (2021). 인천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인천시의회사무처. (2022). 인천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인천시의회사무처. (2023). 인천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인천시의회사무처. (2024). 인천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인천시의회사무처. (2025a). 인천시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
인천시의회사무처. (2025b). 2025년도 인천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인천시의회사무처. (2026). 인천시의회사무처 내부자료.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무처 조직현황. https://www.ggc.go.kr/site/main/council/organization(검색일: 2026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무처 조직현황. https://council.busan.go.kr/council/org(검색일: 2026년 2월 2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무처 조직현황. https://www.smc.seoul.kr/publish/view.do?menuId=001001008001(검색일: 2026년 2월 26일)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무처 기구표. https://www.council.jeju.kr/council/secretariat/employee.do(검색일: 2026년 2월 9일)

부록

부록

인천광역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위상 및 역할 강화에 대응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조직 및 기능 개편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사무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편과 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귀하여 소중한 의견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기능 개편의 기초 정보가 되므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01월

인천연구원

- **연구책임자 :** 이미애 연구위원(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032-260-2692, brightmiae@ii.re.kr)
- **공동연구자 :** 변서후 전임연구원(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032-260-2728 seohoo@ii.re.kr)

응답자 일반사항

문1. 귀하의 성별을 응답해 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문2. 귀하의 직종을 응답해 주십시오.

① 행정직군 ② 기술직군 ③ 전문직군(임기제 등) ④ 기타 ( )

문3. 귀하의 직급을 응답해 주십시오.

① 9급-8급 ② 7급 ③ 6급 ④ 5급 ⑤ 4급 이상

설문 시작

인천광역시의회의 대내외 환경 분석

문 1.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환경분석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실 때 인천광역시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 환경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개방형).

[작성 예시]

- 강점·약점: 리더십, 구성원 역량, 인력·재정 등의 가용자원, 보유 기술과 정보, 조직구조에 대한 장단점 등 내부요인
  - 강점 예시: 조직구성원의 높은 역량, 집행부와의 협치, 자유로운 조직 문화
  - 단점 예시: 전문성 부족, 직원 부족, 인사·승진 적체, 직원간 역할에 대한 인식 격차, 집행부와 인사교류 부재 등
- 기회 요인: 조직에 우호적인 외부 여건으로 성공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
  - 기회 예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 위협 요인: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장애가 되는 외부 요인
  - 위협 예시: 인사·승진 적체, 집행부의 지방의회 견제,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부재

번호	질문		답변
1	대내적 환경	인천광역시의회의 **장점(강점)**	
2		인천광역시의회의 **단점(약점)**	
3	대외적 환경	인천광역시의회에 주어진 **기회요인**	
4		인천광역시의회에 직면한 **위협요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조직 운영

문 2-1.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 조직 개편의 필요성 및 부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작성예시]

■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문항(①주민수요 대응, ②수행기능 부적합, ③과중한 업무량, ④전문성 부족, ⑤비효율적인 업무절차, 기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기입(0 ~ 10점)

부서명		조직개편의 필요 인식	문항 (0점 ~ 10점)						기타 (기타 사유 기입)
담당관	담당		⓪ 문제없음	① 주민수요 대응	② 수행기능 부적합	③ 과중한 업무량	④ 전문성 부족	⑤ 비효율적 업무절차	
부서 1	○○ 담당	필요 사유 및 정도		3		7		10	
	△△ 담당	필요 사유 및 정도		1	9	5	4	7	
부서 2	□□ 담당	필요 사유 및 정도		1			8		
	◇◇ 담당	필요 사유 및 정도	✔						

부서명		조직개편의 필요 인식	문항 (0점 ~ 10점)						기타 (기타 사유 기입)
담당관	담당		⓪ 문제없음	① 주민수요 대응	② 수행기능 부적합	③ 과중한 업무량	④ 전문성 부족	⑤ 비효율적 업무절차	
의정 정책	총무	필요 사유 및 정도							
	인사	필요 사유 및 정도							
	관리	필요 사유 및 정도							
	비서	필요 사유 및 정도							

부서명		조직개편의 필요 인식	문항 (0점 ~ 10점)						기타 (기타 사유 기입)
담당관	담당		⓪ 문제없음	① 주민수요 대응	② 수행기능 부적합	③ 과중한 업무량	④ 전문성 부족	⑤ 비효율적 업무절차	
소통홍보	소통홍보 정책	필요 사유 및 정도							
	언론홍보	필요 사유 및 정도							
	방송영상	필요 사유 및 정도							
의사	의사	필요 사유 및 정도							
	의안	필요 사유 및 정도							
	의정정보화	필요 사유 및 정도							
	기록	필요 사유 및 정도							
입법	입법정책	필요 사유 및 정도							
	입법조사	필요 사유 및 정도							
	법제지원1	필요 사유 및 정도							
	법제지원2	필요 사유 및 정도							

문 2-2 다음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기능(설명 표 참고)을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5년후)의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수요, 인력보충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능별로 1~10점 사이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설명]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 기능을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5년후) 상대적 수준을 1점 ~ 10점 사이로 응답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6	7	8	9	10

〈지방의회 사무기구 기능과 역할〉

구분	주요 기능	세부 기능
사무처리 기능	조직유지	■ 조직 및 인사관리, 교육 훈련, 예산 편성·집행·결산, 건물 시설물 관리, 문서처리, 인쇄작업, 우편물 발송, 사무실 배정, 대외관계 등
	의회운영	■ 위원회 구성·배치, 의원연구단체 운영, 의사진행, 회의록 작성, 전문위원·정책지원 전문인력제 운영, 조직 발전 등
	기능유지	■ 자치법규 입법, 예·결산 심의 확정, 집행기관 행정사무 및 정책사항 평가, 교육자치 관련 업무, 각종 의결권 행사 등
	여론수렴	■ 집단민원 처리, 청원처리, 민원현장 확인, SNS 민원 처리,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 기능	입법지원	■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자치법규 입법지원, 법령개선 건의안, 해외 지방자치법규 동향 파악 등
	정책지원	■ 집행기관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 의회 결의안, 동의안 지원 등
	조사분석	■ 의안의 조사 및 분석, 각종 영향평가 분석, 자치법규 및 예결산 자료 조사 및 분석, 의원요청사항 분석 등
	역량강화	■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역량 및 기능 강화 연수, 의원 청렴도 증진 등

자료: 박노수 외(2021); 주희진 외(2024)

구분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 수요	인력 보충 필요성
대기능	중기능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사무처리 기능	조직유지				
	의회운영				
	기능유지				
	여론수렴				
의정활동 지원 기능	입법지원				
	정책지원				
	조사분석				
	역량강화				

문 2-3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조직기구(설명 표 참고)별 기능을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5년후)의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수요, 인력보충 필요성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능별로 1~10점 사이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설명]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 기능을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5년후) 상대적 수준을 1점 ~ 10점 사이로 응답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6	7	8	9	10

구분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 수요	인력 보충 필요성
담당관	담당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의정정책관	총무				
	인사				
	관리				
	비서				
소통홍보 담당관	소통홍보정책				
	언론홍보				
	방송영상				
의사담당관	의사				
	의안				
	의정정보화				
	기록				

〈계속〉

구분		기능 중요도	업무 난이도	행정 수요	인력 보충 필요성
담당관	담당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향후 (5년후)
입법담당관	입법정책				
	입법조사				
	법제지원 1				
	법제지원 2				
수석 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문 2-4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현행 배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부적절 (문 2-5 이동) ② 보통 (문 3-1 이동) ③ 적절 (문 3-1 이동)

문 2-5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현행 배치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기능

문 3-1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향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행정 기능 조정 의견과 이에 대한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란에는 신설, 폐지, 통폐합, 분리, 확대, 축소, 이관,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개방형)

[작성예시]

■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자유롭게 기입해주십시오

부서명		업무 명	조정 방안 (해당 칸에 ○ 표)								조정 방안 (주체)	이유/근거 (자세히 기입)
담당관	담당		신설	폐지	통폐합	분리	확대	축소	이관	위탁		
부서	○○ 팀	000 업무				○					새로운 과 단위로 독립	바이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00업무의 강화 필요
	△△ 팀	000 업무		○							A팀 → B팀	각 팀별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위해 B팀으로 이관
부서	□□ 팀	000 업무			○						C팀과 D팀 통합	업무 연계성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통합

부서명		업무 명	조정 방안 (해당 칸에 ○ 표)								조정 방안 (주체)	이유/근거 (자세히 기입)
담당관	담당		신설	폐지	통폐합	분리	확대	축소	이관	위탁		

문 3-2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기타 개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 설문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5년도 정책연구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발 행 인 최계운
발 행 일 2026년 4월 30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청송출판인쇄사
I S B N 979-11-6870-373-5 9335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인천연구원 202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